2021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사항(국문)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주 요 개 정 내용 -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조건부 선급증서 요건 신설

(2) 2020.04.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입거주기 연장제도(EDD) 적용대상 선박의 정기검사 요건인 앵커/체인 배열 및 계측 요건 개정

◉ 한국어선법 적용 대상선박은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 추가

(3) 2020.06.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Coronavirus Disease(COVID-19)와 같은 Pandemic관련 불가항력 요건 개정

(4) 2021.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시행일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된 선박)

◉ IACS UR Z18(Rev.9 Apr 2020) 반영

- IACS UR M 79를 반영하여 규칙 7편 9장에 신설된 “예인 윈치의 비상풀림장치”의 정기적 검사요건 신설.

◉ IACS UR Z1 (Rev.8 Jul 2020) 반영

- IMO Res. A. 1140(31)을 반영하여 규칙 1편 2장 2절 204. 3 (27)을 수정 및 3절 304. 3 (3)을 삭제함.

(5)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내부고객의 개정요청 반영

- 추가설비부호에 대한 선택/강제 여부를 명확화 (환경배관팀)
- KR규칙에 대한 해석권한은 KR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선급의 범위” 신설 (기술영업지원팀)
- 한국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입거검사 요건 명확화 (검사업무팀)
- Self-Unloading Bulk Carrier에 대한 Notation의 조건에 대한 내용 보완 (부산지부)

◉ 그 외 규칙 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등에 대한 개정

- 검사강화제도(ESP) 적용대상 선종(Tank type 포함) 명확화
- “선급기술규칙”, “불가항력” 및 “코퍼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도입 및 “대체설계”의 정의에서 문구 수정 등
-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에 배기가스 배출저감장치(SCR, EGR 및 EGCS) 검사에 대한 적용요건 인용
- 부록 1-8에 규정된 CBM의 적용근거를 규칙에 마련
- 통상의 Boiler 검사요건에 대한 대체 검사요건 신설(구체적 요건은 지침에 신설)
- 지침의 요건 규칙으로 이동

(6)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IACS UR Z7(Rev.28 Corr.1 Dec. 2020)의 개정사항 반영

- 선체검사에 관한 요건이므로 (13)호인 “탱크 압력시험”을 참조해야 하지만 배관시스템 검사에 관한 (9)호를 참조하라고 언급되어있어 수정

(1) 2020.03.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회보(2020-1-E, 2/19)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 제 2 절 〈생략〉**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301. ~ 306. 〈생략〉 307. 복원성시험 【지침 참조】 1. 〈생략〉 2. 1항의 복원성시험은 이들 선박의 비손상복원성이 의도하는 운항에 적절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비손상 복원성이 적절하다고 함은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르는 해당 기국의 기준 또는 우리 선급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길이 24 m 이상인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결의 (Part A of IMO Res.MSC.267(85)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 (2008 IS Code))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기국이 다른 기준을 인정한 경우 이 기준을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국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 제 2 절 〈현행과 동일〉**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301. ~ 306. 〈현행과 동일〉 307. 복원성시험 *(2020)* 【지침 참조】 1. 〈현행과 동일〉 2. 1항의 복원성자료의 작성 및 승인시험은 이들 선박의 비손상복원성이 의도하는 운항에 적절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비손상 복원성이 적절하다고 함은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르는 해당 기국의 기준 또는 우리 선급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길이 24 m 이상인 선박에 대한 비손상 복원성의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결의 (Part A of IMO Res.MSC.267(85)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n intact stability, 2008)~~(2008 IS Code))~~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해당 기국이 다른 기준을 인정한 경우 이 기준을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국의 승인에 관한 증거는 선급등록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하 현행과 동일〉	- 기본기술팀 개정의견 반영함 - 축약된 2008 IS Code를 삭제하는 대신에 원래 문구를 현행대로 유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 검사업무팀 개정요청(SUR3000-2509-2019, 2019.12.23)에 의거 : 조건부 선급증서 요건 신설
501. 선급증서 1.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 및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은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선급의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501. 선급증서 1.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 및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은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선급의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선급증서를 발급한다.	
502. 단기선급증서 1. 제조중등록검사 또는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지침 참조】**	502. 단기선급증서 *(2020)* ~~1.~~ 제조중등록검사 또는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때는 선급증서 발행하기 전까지 유효한 ~~하도록~~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2.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기선급증서를 발급한다. 【지침 참조】~~	- 협약검사내규 참조함 - 문구 수정 - 신설되는 조건부 선급증서로 이동함
〈새롭게 추가〉	503. 조건부 선급증서 *(2020)* 1.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수리/검사장소/또 다른 계선장소 또는 폐선장소까지의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 선급증서를 대신하여 조건부 선급증서를 발행한다. 여기서, 단일직항 등을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901. 5항 및 7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외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이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선급증서를 발행한다.	- 문구 위치 조정 * 용도 변경된 25년 이상된 VLOC와 관련하여 조건부 선급증서 발급의 필요성이 식별됨
503. ~ 504. 〈생략〉	504. ~~503.~~ ~ 505. ~~504.~~ *(2020)*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06.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2020)***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포함),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번호 조정 - 조건부 선급증서 추가함 - 문구 수정
506. 〈생략〉	**507. ~~506.~~ *(2020)*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507. 증서의 재발행 및 반환 1.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분실 또는 손상했을 때,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단기선급증서를 가진 선박이 선급증서를 받은 때, 증서가 분실된 때를 제외하고 증서재교부를 받은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는 선급증서, 구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를 즉시 우리 선급에 반환하여야 한다.	**508. ~~507.~~ 증서의 재발행 및 반환 *(2020)*** 1. 선급증서(~~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포함),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를 분실 또는 손상하였거나 ~~했을 때~~,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를 가진 선박이 선급증서를 받은 때, 증서가 분실된 때를 제외하고 증서재교부를 받은 때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는 선급증서, 구선급증서(~~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포함)를 즉시 우리 선급에 반환하여야 한다.	- 번호 조정 - 문구 수정
508. ~ 509. 〈생략〉	**509. ~~508.~~ ~ 510. ~~509.~~ *(2020)*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제 6 절 검사신청	**제 6 절 검사신청**	
601. ~ 602. 〈생략〉	**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증서의 재교부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재교부 신청과 반환은 선박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03. 증서의 재교부 *(2020)*** 선급증서 (~~또는~~ 단기선급증서 또는 조건부 선급증서 포함),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의 재교부 신청과 반환은 선박소유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조건부 선급증서 추가함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901. 선급정지 및 회복 〈현행과 동일〉**	검사업무팀 개정요청(SUR3000-2509-2019, 2019.12. 23.)에 의거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새롭게 추가〉	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2020)*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동일〉	
(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	(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	
(7)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7)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 상부로 이동
3.~ 6. 〈생략〉	3.~ 6. 〈현행과 동일〉	
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단일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단기선급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	7. 계선 중인 선박이 기한을 지난 정기적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선급정지는 보류될 수 있고, 우리 선급이 기한이 지난 검사 및 계선기간을 고려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조건으로, 계선위치로부터 수리/검사/또 다른 계선장소까지 단일직항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도하는 항해에 대한 조건이 명시된 조건부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요건은 계선되기 전에 이미 선급이 정지된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20)* 〈이하 현행과 동일〉	- 조건부 선급증서로 대체함.

(2) 2020.04.01일자 시행사항

(※ 회보(2020-2-E, 3/30)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2 장 선급검사**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2018)* 1. ~ 정기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 참조】 (1) 입거 또는 상가를 하여 **603.**에서 정하는 검사. 다만, **605.**에 규정된 "입거주기 연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박인 경우 이 검사는 **605.**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생략〉 (3) 앵커 및 체인을 배열하여 검사한다. 체인로커 및 고정장치, 호저파이프 및 체인스토퍼를 검사하고, 체인로커의 펌핑장치를 시험한다. 다만, 제2차 및 그 이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앵커체인을 계측하고 계측결과 평균 지름이 규정에 의한 원래의 지름에서 12%를 초과하여 쇠모된 경우에는 교환한다. 〈새롭게 추가〉	〈규칙〉 **제 2 장 선급검사**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2018)* 1. ~ 정기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 참조】 (1) 입거 또는 상가를 하여 **603.**에서 정하는 검사. 다만, **605.**에 규정된 "입거주기 연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박인 경우 이 검사는 **605.**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현행과 동일〉 (3) 앵커 및 체인을 배열하여 검사한다. 체인로커 및 고정장치, 호저파이프 및 체인스토퍼를 검사하고, 체인로커의 펌핑장치를 시험한다. 다만, 제2차 및 그 이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앵커체인을 계측하고 계측결과 평균 지름이 규정에 의한 원래의 지름에서 12%를 초과하여 쇠모된 경우에는 교환한다. **【지침 참조】** *(2020)*	- 통영지부 및 검사업무팀 개정 요청 (by phone) : 입거주기 연장제도 적용대상 선박인 겨우, 7.5 년차 중간 검사시 입거검사도 이루어져서, 앵커/체인 배열 및 계측도 같이 실시할 예정인데, 금번에 실시하면 다음의 2차 정기 검사시 수중검사(IWS1(EDD))를 실시하므로 상기항목에 대한 배열 및 계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적용지침〉 **제 2 장 선급검사**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1. ~ 2. **〈생략〉** 3. **규칙 403.**의 1항 (7)호 (다) 및 (라)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의 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새롭게 추가〉 4. ~ 10. **〈생략〉**	〈적용지침〉 **제 2 장 선급검사**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1. ~ 2. **〈현행과 동일〉** 3. **규칙 403.**의 1항 (7)호 (다) 및 (라)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의 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규칙 605.**에 규정된 "입거주기 연장제도"의 적용대상 선박으로서 정기검사시 입거검사를 대신하여 수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칙 403.**의 **1항 (3)호** 항목 중 가능한 범위까지 육안검사 및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상태가 만족하다면, 앵커/체인 배열 및 검사(해당되는 경우, 계측 포함), 체인로커 내부검사 및 체인로커의 펌핑장치 시험은 다음에 계획된 입거검사시에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참조】** *(2020)* 5. 4. ~ 11. 10.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검사사항** **1. ~ 8.** 〈현행과 동일〉 **9.** EDD 부호를 가진 선박인 경우 **605.**의 **2**항에 규정된 EDD 부호를 부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만족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이하 생략〉	**〈규칙〉**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검사사항** **1. ~ 8.** 〈현행과 동일〉 **9.** EDD 부호를 가진 선박인 경우 **605.**의 **2**항에 규정된 EDD 부호를 부기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만족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2020)* 〈이하 현행과 동일〉	- 통영지부 및 검사업무팀 개정 요청 (by phone) : 입거주기 연장제도 적용대상 선박인 경우, 7.5 년차 중간 검사시 입거검사도 이루어져서, 앵커/체인 배열 및 계측도 같이 실시할 예정인데, 금번에 실시하면 다음의 2차 정기 검사시 수중검사(IWS1(EDD))를 실시하므로 상기항목에 대한 배열 및 계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적용지침〉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2. 〈생략〉** **603. 검사사항** **1. ~ 4. 〈생략〉** **5. 규칙 603.**의 6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새롭게 추가〉 **6. 〈생략〉**	**〈적용지침〉**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2. 〈현행과 동일〉** **603. 검사사항** **1. ~ 4. 〈현행과 동일〉** **5. 규칙 603.**의 6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규칙 603.**의 9항에 추가하여 입거주기 연장제도 적용대상 선박으로서 이전의 정기검사시 입거검사를 대신하여 수중검사를 실시한 선박의 경우, **규칙 403.**의 **1항 (3)호**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규칙 참조】** *(2020)* **7. 6.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9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901. 〈생략〉** **1902.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 한국국적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가공 또는 운반선 제외)의 경우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준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거쳐 그 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진수일로부터 선령 5년 미만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는 연차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한국어선법 적용대상 선박의 두께계측 범위, 두께계측 방법, 쇠모한도, 두께계측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2항, 3항 및 별표 14에 따라서 실시한다. *(2019)* 4. 진수일로부터 선령 30년 이상이고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중간검사 시의 두께계측 요건은 전회 정기검사와 동일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5. 203., 303. 및 502.(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6. ~ 7. **〈생략〉** 〈이하 생략〉	**제 19 절 대한민국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901. 〈현행과 동일〉** **1902. 대한민국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 대한민국 ~~한국~~ 어선법 적용 대상선박은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항에서 8항까지의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0)* 2. ~~1.~~ 대한민국 ~~한국~~국적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선(가공 또는 운반선 제외)의 경우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준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선급의 승인을 거쳐 그 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 7.~~ → 2. ~ 8. 〈이하 현행과 동일〉	'19년도 해양 수산부 지도·감독 시의 부적합사항 (3번) '선급 및 강선규칙에 어선 구조기준 미반영' 건에 대한 시정 조치 - 문구 수정 - 어선법과 강선 규칙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식별하였으며, 그에 따라 강선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함. - 강선규칙 각 편에 어선법과 차이나는 사항을 모두 삽입하는 방안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칙 1편 2장 19절 1902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에 어선법 적용대상 선박은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함 (내부심의회의 ' '20.3.16)에 따라 개정.

(3) 2020.06.01일자 시행사항

(※ 회보(2020-3-E, 5/13)로 기 시행 중인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 장 선급등록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1. ~ 5. **〈생략〉** 6.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 (1) 선박기록의 검토 (2)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3)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제 1 장 선급등록**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1. ~ 5. 〈현행과 동일〉 6. **불가항력(force majeure)** *(2020)*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지침 참조】** (1) 선박기록의 검토 (2) 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3) 선박이 양하항까지의 단일항해 및 필요시 수리시설까지의 연이은 평형수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우리 선급의 만족(현재 항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검사원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가장 가까운 도착항까지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야 한다. (4) 감염병 대 확산 등(Pandemic) ~~예, COVID-19)~~과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모든 조건으로 합의된 기한까지 선급유지상태를 허용할 수 있다. *(2020)* (가) ~~(1)~~ 기국의 승인(해당되는 경우) (나) ~~(2)~~ 선박기록의 검토 (다) (3) 검사원이 정당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첫 번째 도착항에서 지정된 검사 및/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검사 (라) ~~(4)~~ 선박의 합의된 연기 기간 동안 만족스럽게 선급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여기서, 우리 선급은 원격검사나 수용 가능한 사진, 비디오 또는 기타 구조물/장비 상태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5)~~ 선박이 합의된 기간 동안 우리 선급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리는 선장의 진술서	* 국제업무팀의 개정요청에 의거 (By E-mail) : COVID-19 Pandemic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일부 개정 (KR 검사기술심의위원회 결과 참조) - 문구 수정 및 조항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쟁;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쟁;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예, 감염병 대 확산 등(Pandemic) ~~COVID-19와 같은 Pandemic)~~을 말한다. *(2020)*	* 국제업무팀의 개정요청에 의거 (By E-mail) : COVID-19 Pandemic 관련하여 불가항력 요건 일부 개정 (KR 검사기술심의 의원회 결과 및 LR 규칙 참조) - 문구 수정

(4) 2021.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시행일 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된 선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27. 〈생략〉** 28. 1항부터 25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17) 〈새롭게 추가〉 〈이하 생략〉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27. 〈현행과 동일〉** 28. 1항부터 27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17)* 29. **7편 9장 8절**에서 규정하는 예인 윈치의 비상풀림장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한다. *(2021)* (1)제조자가 제공하는 문서화된 검사지침서를 참고하여 예인 윈치의 비상풀림장치의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부하 상태에서 비상풀림장치의 작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윈치 브레이크를 관찰함으로서 비상풀림장치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다. (2)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비상풀림장치와 관련된 경보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풀림장치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블랙아웃 시에 예인삭을 비상으로 풀 수 있는 장치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치에 추가의 동력원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에너지원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5) 비상풀림장치의 성능 및 운전 지침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윈치가 설치된 선박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IACS UR Z18 (Rev.9 Apr 2020)〉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04. 선종별 추가요건 【지침 참조】 **1.부터 2. 〈생략〉** **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1) 부터 (26) 〈생략〉 (27) 실행가능한 한 화물, 연료유, 평형수 및 벤트 관장치와 벤트마스트 및 플레임스크린을 검사한다. (28) 부터 (54) 〈생략〉	**204. 선종별 추가요건 【지침 참조】** **1.부터 2. 〈현행과 동일〉** **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1) 부터 (26) 〈현행과 동일〉 (27) 실행가능한 한 화물, 연료유, 평형수 및 벤트 관장치와 압력/진공 도출밸브, 벤트마스트 및 보호망을 검사한다. 압력도출밸브가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시험일자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021)* (28) 부터 (54) 〈현행과 동일〉	- IMO Res.A.1140(31)에 따른 IACS UR Z1 (Rev.8 Jul 2020) 반영하여 문구 수정
제 3 절 중간검사	**제 3 절 중간검사**	
304. 선종별 추가요건 **1.부터 2. 〈생략〉** **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1) 부터 (2) 〈생략〉 (3) 드라이 케미컬 분말 소화장치의 분배관은 건조공기로 통기시험(air blow test)을 하여야 한다. *(2020)* (4) 부터 (10) 〈생략〉 〈이하 생략〉	**304. 선종별 추가요건** **1.부터 2. 〈현행과 동일〉** **3. 액화가스 산적운반선** (1) 부터 (2) 〈현행과 동일〉 ~~(3) 드라이 케미컬 분말 소화장치의 분배관은 건조공기로 통기시험(air blow test)을 하여야 한다. *(2020)*~~ (3)~~(4)~~ 부터 (9)~~(10)~~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	- IMO Res.A.1140(31)에 따른 IACS UR Z1 (Rev.8 Jul 2020) 반영하여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1. 〈생략〉 **2. 주기관 및 보조기관 이외의 기관장치 검사사항 (2018)** (1)부터 (13) [생략] 〈새롭게 추가〉 〈이하 생략〉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1. 〈현행과 동일〉** **2. 주기관 및 보조기관 이외의 기관장치 검사사항 (2018)** (1)부터 (13) 〈현행과 동일〉 (14) **7편 9장 8절**에서 규정하는 예인 윈치의 비상풀림장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한다. *(2021)* (가)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자의 추가적인 지침을 적절히 따르면서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비상풀림장치의 최대 성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은 볼라드 풀(bollard pull) 시험 중에 시행하거나 또는 예인선 갑판의 보강된 부분 또는 육상에 적절한 하중으로 증명된 예인하중을 가함으로서 시행될 수 있다. (다) 비상풀림장치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IACS UR Z18 (Rev.9 Apr 2020)〉 반영

(5-1)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101. 용어의 정의 〈생략〉** **102. 등록** 1. 우리 선급의 규칙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건조되고 검사를 받은 선박은 선급을 부여하고 선명록에 등록한다. 2.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급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생략〉** 〈생략〉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 *(2020)* **1. 〈생략〉** **2. 〈생략〉** (1) 부터 (4) 〈생략〉 (5) 추가설비부호 (가) 추가설비에 대한 부기부호로서 LI, LG, HMS, HMS1 등과 같은 선체사항은 선체부호 다음에, CMA, UMA, DPS, NBS, IGS, COW, STCM, RMC 등과 같은 기관사항은 기관부호 다음에 부기한다. (나) 이러한 부호는 선박제조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건에 만족함을 확인 후 부여할 수 있다. *(2018)*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101. 용어의 정의 〈현행과 동일〉** **102. 등록 및 선급의 유지 *(2021)*** 1. 우리 선급의 규칙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건조되고 검사를 받은 선박은 선급을 부여하고 선명록에 등록한다. 2.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급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에 부여하는 선급부호는 다음에 따른다. *(2020)*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1) 부터 (4) 〈현행과 동일〉 (5) 추가설비부호 (가) 추가설비에 대한 부기부호로서 LI, LG, HMS, HMS1 등과 같은 선체사항은 선체부호 다음에, CMA, UMA, DPS, NBS, IGS, COW, STCM, RMC 등과 같은 기관사항은 기관부호 다음에 부기한다. (나) 이러한 부호는 선박제조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요건에 만족함을 확인 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선원 및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관련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 후 ~~하고~~ 해당부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021)*	- 내용 일치를 위하여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강제사항임을 명시함. (EGCS, BWT 등) -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8 절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제 8 절 검사원의 권한 과 및 의무 및 선급의 책임과 업무 범위 *(2021)***	
801. 검사원의 권한 【지침 참조】 1. 우리 선급 검사원은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임검할 수 있다. 2. 우리 선급 검사원은 규칙에 정하는 검사준비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회자가 없을 때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생략〉 4. 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설비가 우리 선급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손상 또는 마모되었을 때는 수리 또는 새 것으로 교환할 것을 검사 신청자에게 통고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801. 검사원의 권한 【지침 참조】** 1. 우리 선급 검사원은 검사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임검할 수 있다. *(2021)* 2. 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급기술규칙에 정하는 검사준비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회자가 없을 때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2021)* 3. **〈현행과 동일〉** 4. 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박의 선체, 기관, 기타 설비가 우리 선급기술규칙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손상 또는 마모되었을 때는 수리 또는 새 것으로 교환할 것을 검사 신청자에게 통고하고, 신청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	- 현행과 일치를 위하여 (등록된 선박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함
802. 검사원의 의무 1. 우리 선급 검사원은 등록된 선박의 검사신청이 있을 때는 모든 검사에 임하여야 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802. 검사원의 의무** 1. 우리 선급 검사원은 선급 등록검사 또는 등록된 선박, 재료, 의장품 및 기관장치 등에 대한 의 검사신청이 있을 때는 모든 관련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1)* 〈현행과 동일〉	- 현행과 일치를 위하여
〈새롭게 신설〉	**804. 선급의 범위 *(2021)*** 1. 우리 선급은 선박과 그 선박에 설치된 의장품이나 기관장치 등의 무결성이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증서, 보고서, 도면 또는 문서의 검토나 승인에 대한 유효성, 적용 및 해석은 전적으로 우리 선급기술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유일한 판단 권한은 우리선급이 가진다. 2. **우리 선급**기술규칙의 적용 및 해석은 우리 선급이 한다. 우리선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규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유효하지 않다. 3. 우리 선급은 우리 선급이 제공하지 아니한 서비스 또는 관련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술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결성이나 안전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아니다.”를 “무결성이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로 변경함. - 원래 문구를 유지함 - 기술영업지원팀 요청 (타선급 Bench marking) : 우리선급기술규칙에 대한 해석 권한은 우리 선급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804. ~ 807. 〈생략〉	8054. ~ 8087.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1.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선급이 정지된다. **【지침 참조】** (1) 지정일까지 또는 **2장 401.**의 1항에 따라 허용된 연장의 만료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운항을 재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정일까지 또는 **2장 401.**의 1항에 따라 허용된 연장의 만료일까지 검사원의 입회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검사기간의 만료시점까지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해당 검사기간의 만료시점까지 검사원의 입회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지정된 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이러한 검사의 차기 지정일은 원래 지정일로부터 산정한다. 그러나 선급이 정지된 일자부터 회복된 일자까지 그 선박의 선급은 정지된 것이다. 〈새롭게 추가〉	**〈규칙〉**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1.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선급이 정지된다. ~~**【지침 참조】**~~ (1) ~ (2) 〈현행과 동일〉 상기 지정된 검사를 만족하게 완료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이러한 검사의 차기 지정일은 원래 지정일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그러나~~ 선급이 정지된 일자부터 회복된 일자까지 그 선박의 선급은 정지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정기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및 IACS PR 1C A.1.1, A1.2 및 A1.3을 참조함 - 문구 수정
〈적용지침〉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 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용지침〉**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 ~~**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6.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지침 참조】** 〈생략〉 〈새롭게 추가〉 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쟁;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규칙〉** 6. 선박소유자 또는 우리 선급의 통제한계를 정당하게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선박이 허용된 기간의 만료시점에 기한이 지난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의 조건으로 합의된 양하항까지의 직항을 선급유지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합의된 항구까지의 평형수항해를 허용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현행과 동일〉 이때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후 차기 검사지정일자는 원래의 지정일로부터 산정한다. *(2021)* 만일 이러한 불가항력으로 이미 선급이 자동적으로 정지된 경우 상기조건으로 선급이 회복될 수 있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및 PR 1C A1.7의 내용에는 추가로 빨강색 요건이 더 언급됨 - 문구 수정 - 용어의 정의로 이동함
〈적용지침〉 **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 **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용지침〉** ~~**901. 선급정지 및 회복 【규칙 참조】**~~ ~~**규칙** 901.의 1항 및 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는 그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의 선령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원래 검사지정일의 검사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27. 〈생략〉** 〈새롭게 추가〉 28. 1항부터 25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17) 〈이하 생략〉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27. 〈현행과 동일〉** 28.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SCR, EGR 및 EGCS)에 대한 검사는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의 각 해당 규정에 따른다. *(2021)* 29. 1항부터 28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21)* 〈이하 현행과 동일〉	- 연차검사항목에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제 3 절 중간검사	**제 3 절 중간검사**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9. 〈생략〉** 〈새롭게 추가〉 10. 1항부터 8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1.부터 9. 〈현행과 동일〉** 10.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SCR, EGR 및 EGCS)에 대한 검사는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의 각 해당 규정에 따른다. *(2021)* 11. **1항**부터 **10항**에 추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18절의 관련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021)* 〈이하 현행과 동일〉	- 중간검사항목에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현 행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2018)*

표 1.2.3 정기검사 시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2020)*

구역 \ 정기검사 구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통풍용 덕트 (설치된 경우)[2] *(2019)*	-	-	O	O
〈생략〉				

(비고)
1. ~ 2. 〈생략〉
3. 용어의 정의 :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및 통풍용 덕트 (IACS Rec. 111 참조). *(2019)*
   1) **해수유입 덕트(Downflooding ducts) : 〈생략〉**
   2) **통풍용 덕트(Structural ventilation ducts)** : 공기압에 의한 하중 이외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어 선박 구조나 자체 지지에 통합 될 수 있다. 통풍용 덕트는 수밀격벽을 통과하는 경우 또는 선박의 계산된 손상 시나리오에 따라 선박의 손상 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예, 선종부호가 RoRo Ship, Passenger Ship-RoRo나 Passenger Ship-Car Ferry 등의 차량을 운송하기 위한 화물구역에 설치된 통풍용 덕트로 그 경계(boundary) 중 한 면은 외판(side shell plating)으로 구성되어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

개 정 안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3. 검사사항 *(2018)*

표 1.2.3 정기검사 시 구역의 내부검사 최소범위 (2020)

구역 \ 정기검사 구분	제1차 정기검사	제2차 정기검사	제3차 정기검사	제4차 및 이후 정기검사
〈생략〉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통풍용 덕트 (설치된 경우)[2] *(2019)*	-	-	O	O
〈생략〉				

(비고)
1. ~ 2. 〈생략〉
3. 용어의 정의 : 선박의 구조물에 통합된 해수유입 덕트 및 통풍용 덕트 (IACS Rec. 111 참조). *(2019)*
   1) **해수유입 덕트(Downflooding ducts) :** 〈현행과 동일〉
   2) **통풍용 덕트(Structural ventilation ducts) :** 선체구조와 통합되거나 자체 지지되는 방식으로 주변이 보강된 통풍용 덕트를 말한다. 이 통풍용 덕트는 수밀격벽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선박에 대한 손상 시나리오에 따른 손상 시 물로 채워질 수 있는 구역에 사용 될 수 있다. ~~공기압에 의한 하중 이외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어 선박 구조나 자체 지지에 통합 될 수 있다. 통풍용 덕트는 수밀격벽을 통과하는 경우 또는 선박의 계산된 손상 시나리오에 따라 선박의 손상 시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현행과 동일)

* **Structural ventilation ducts** are stiffened in such a way that the boundaries can withstand loads other than just the loads from air pressure and may be integrated with the ship structure or self supporting. These ducts are used in cases where a ventilation duct is crossing a watertight bulkhead, or in spaces that may be filled in case of damages according to the damage scenarios calculated for the ship. **(해당 영문)**

개 정 사 유

- **통풍용 덕트**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글 번역 오기로 인한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1. **〈생략〉** **2. 주기관 및 보조기관 이외의 기관장치 검사사항 (2018)** (1)부터 (13) [생략] 〈새롭게 추가〉 〈이하 생략〉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1. **〈현행과 동일〉** **2. 주기관 및 보조기관 이외의 기관장치 검사사항 (2018)** (1)부터 (13) [현행과 동일] (14)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SCR, EGR 및 EGCS)에 대한 검사는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의 각 해당 규정에 따른다. *(2021)* 〈이하 현행과 동일〉	- 정기검사항목에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항목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4. 〈생략〉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 **1. 일반** (1)~(3) 〈생략〉 (4) 선박소유자는 선령이 10년을 넘기 전까지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따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차 정기검사 이후에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따를 것을 신청하여 선령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지정된 입거검사를 입거 또는 상가하여 시행한 경우 이후 입거검사는 수중검사부터 시작하여 입거검사와 수중검사를 번갈아 가며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 추가〉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4. 〈현행과 동일〉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 **1. 일반** (1)~(3) 〈현행과 동일〉 (4) 선박소유자는 선령이 10년을 넘기 전까지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따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차 정기검사 이후에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따를 것을 신청하여 선령 10년부터 15년 사이에 지정된 입거검사를 입거 또는 상가하여 시행한 경우 이후 입거검사는 수중검사부터 시작하여 입거검사와 수중검사를 번갈아 가며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21)*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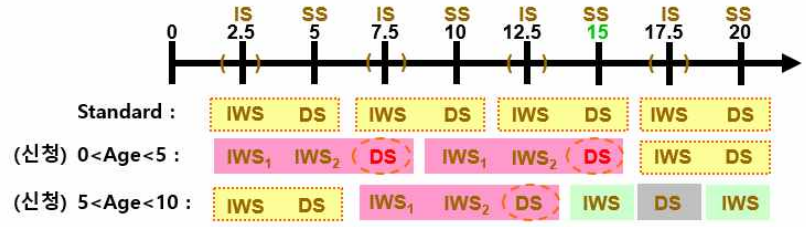 비고 : 여기서 IS는 중간검사, SS는 정기검사, IWS는 수중검사 및 DS는 입거검사를 의미한다.	요건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 추가 * **기국의 승인**을 포함한 **EDD관련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령 15년까지** 입거주기 연장 가능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8 절 보일러검사	**제 8 절 보일러검사**	
801. 검사시기 〈생략〉	**801. 검사시기** 〈현행과 동일〉	
802. 검사사항 〈생략〉	**802. 검사사항** 〈현행과 동일〉	
〈새롭게 신설〉	**803. 보일러 상태감시가 되는 선박의 검사【지침 참조】** 지침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BCM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801.의 1항에 규정된 2회의 검사 중 1회에 한하여 일부 검사를 본선 기관장이 수행할 수 있으나 연속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2021)*	- 보일러 수측 상태감시 및 정비를 적용한 보일러 대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문구 수정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901.부터 902 〈생략〉	**901.부터 902 〈현행과 동일〉**	
903. 예방정비제도 1.부터 2. 〈생략〉 3. PMS를 승인받은 선박으로 승인한 상태감시장치(이하 “CM”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4. 부터 6. 〈생략〉	**903. 예방정비제도** 1.부터 2. 〈현행과 동일〉 3. PMS를 승인받은 선박으로 승인한 상태감시장치(이하 “CM”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및 상태 기반 정비(이하 “CBM”이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2021)* 4.부터 6. 〈현행과 동일〉	- 부록 1-8에 규정된 CBM의 적용근거를 규칙에 마련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1. 일반 〈생략〉** **1702. 연차검사** **1. ~ 4. 〈생략〉** **5. 틈새계측** 틈새계측을 위하여 분해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힌지, 베어링 및 추력베어링의 틈새를 계측하여야 한다. 기능시험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틈새계측을 위하여 분해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만일 분해된 경우라면 힌지핀 및 베어링에 대한 육안검사 및 힌지핀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작동 및 정비지침서에 표시된 경우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의 틈새를 계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Measurement of clearances Clearances of hinges, bearings and thrust bearings are to be taken, where no dismantling is required. Where the function test is not satisfactory, dismantling may be required to measure the clearances. If dismantling is carried out, a visual examination of hinge pins and bearings together with NDT of the hinge pin is to be carried out. Clearances of securing, supporting and locking devices are to be measured, where indicated in the OMM. (IACS UR Z24 "Survey Requirements for Shell and Inner Doors of Ro-Ro Ships의 4.5 Measurement of clearance 반영함) 참조〉 힌지, 베어링 및 추력베어링의 틈새를 계측하여야 한다. 작동 및 정비지침서 또는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로로화물선에 대한 **틈새계측은 틈새를 계측하기 위하여 분해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적인 베어링에 국한** 될 수 있다..... (1703. **정기검사** 3. (5))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1. 일반 〈현행과 동일〉** **1702. 연차검사** **1. ~ 4. 〈현행과 동일〉** **5. 틈새계측** ***(2021)*** ~~틈새계측을 위하여 분해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힌지, 베어링 및 추력베어링의 틈새를 계측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 및 정비지침서 또는 제조자의 권고에 틈새계측을 위하여 힌지, 베어링 및 추력베어링의 분해가 필요하다면 틈새의 계측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시험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틈새계측을 위하여 분해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만일 분해된 경우라면 힌지핀 및 베어링에 대한 육안검사 및 힌지핀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작동 및 정비지침서에 표시된 경우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의 틈새를 계측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문구 명확화 : 현장검사원이 보다 쉽게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이는 Z24요건이므로 한글 version만 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9 절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제 19 절 대한민국 ~~한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 검사업무팀의 개정 요청(SUR3000-814-2020, 20.4.3)에 의거 - 문구 수정
1901.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지침 참조】 1. ~ 5. 〈생략〉 **〈새롭게 추가〉**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선박의 예비품 등을 검사한다. **〈새롭게 추가〉** 7. ~ 8. 〈생략〉	**1901. 대한민국 ~~한국~~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지침 참조】** 1. ~ 5. **〈현행과 동일〉** 6.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중간검사시 입거(또는 상가)검사를 ~~는~~ 수중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 *(2021)* 7.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선박의 예비품 등을 검사한다. 8. 아스팔트 운반선 등 ~~과 같이~~ 화물탱크가 일체형탱크가 아닌 독립형탱크에 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경우, 선급기술규칙상 검사강화제도(ESP)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선박은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선박은 유조선으로 분류되어 강화검사(Enhanced Survey)를 실시해야 한다. ~~대상이다.~~ *(2021)* 9. ~~7.~~ ~ 10. ~~8.~~ 〈현행과 동일〉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중간검사시 수중검사로 시행할 수 없으나 해당법규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31조 6항 요건 추가 - ESP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요건이 선급규칙 요건 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 관련 요건 반영 - 번호 조정
1902.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 ~ 5. **〈생략〉**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303.의 2항 및 3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의 작동시험을 한다.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 7. **〈생략〉** 〈이하 생략〉	**1902. 대한민국 ~~한국~~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1. ~ 5. **〈현행과 동일〉** 6. 303.(중간검사 시의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의 적용에 있어 303.의 2항 및 3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의 작동시험을 한다.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7.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중간검사 시 입거(또는 상가)검사를 ~~는~~ 수중검사로 대체할 수 없다. *(2021)* 8. ~~7.~~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	- 어선법 시행규칙 56조 요건 추가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 제 3 절** 〈생략〉 **제 4 절 케미컬탱커** **401. 일반** **1. 적용** (1) 이 규정은 **2장**의 규정에 추가하여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일체형탱크로 된 모든 케미컬탱커에 적용한다. 일체형탱크와 독립형탱크 등 두 가지 형식으로 건조된 케미컬탱커인 경우에는 일체형탱크가 있는 화물지역 길이 범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가스운반선 및 독립형탱크를 가진 케미컬탱커 겸용선박은 가스운반선에 대한 검사를 한다. 〈이하 생략〉 (참조 영문) Combined gas carriers/chemical tankers with independent tanks within the hull, are to be surveyed as gas carriers. (in accordance with 1.1.1. of IACS UR Z10.3)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 제 3 절** 〈현행과 동일〉 **제 4 절 케미컬탱커** **401. 일반** **1. 적용** (1) 이 규정은 **2장**의 규정에 추가하여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일체형탱크로 된 모든 케미컬탱커에 적용한다. 일체형탱크와 독립형탱크 등 두 가지 형식으로 건조된 케미컬탱커인 경우에는 일체형탱크가 있는 화물지역 길이 범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선체내에 독립형 탱크를 가진 겸용선(액화가스산적운반선/케미컬 탱커)의 경우, 액화가스 산적화물선의 요건에 따라 검사한다. *(2021)* 〈이하 현행과 동일〉	- 한글 해석 수정

(5-2)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용어의 정의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지침 참조】** **101. 용어의 정의 *(2020)***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새롭게 추가〉 **3. ~ 10.** 〈생략〉 **11. 대체설계**(alternatives)라 함은 선급기술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를 말한다. **12. 〈현행과 동일〉** 〈새롭게 추가〉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지침 참조】** (2021) **101. 용어의 정의 *(2020)***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1장**,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선급기술규칙**(Classification Technical Rules)이라 함은 규칙 및 지침을 포함한다. *(2021)* 1) **규칙**(Rules)이라 함은 우리 선급에서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기기 등에 대한 선급등록 및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개정된 제 규칙을 말한다. 2) **지침**(Guidances)이라 함은 규칙에 대한 적용지침, 기타 지침 및 기준을 말한다. **4.** ~~**3.**~~ **~ 11.** ~~**10.**~~ 〈현행과 동일〉 **12.** ~~**11.**~~ ~~**대체설계(alternatives)라 함은 선급기술규칙의 규정에 만족하지 않은 설계를 말한다.** *(2021)*~~ **13.** ~~**12.**~~ **〈현행과 동일〉** **14.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라 함은 선박의 손상, 사람의 접근이나 이동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우리 선급이 본선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항구에서의 지연 또는 비정상적인 장기간의 악천후, 노동쟁의 또는 시민항쟁으로 인하여 양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쟁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예, 감염병 대 확산 등(Pandemic)~~COVID-19와 같은 Pandemic~~)을 말한다. *(2021)*	- 선급기술규칙 개발 절차서(P-08), 4. 용어의 정의 참조 - 번호 조정 - 문구수정 : 105. 동등 효력에서 규정된 문구와 통일함. - 현행 유지 - 규칙 1장, 901. 6.에서 이동 -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새롭게 추가〉	**15. 코퍼댐(Cofferdam)**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 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다음의 액체를 적재하는 탱크들이 서로 인접할 때는 코퍼댐을 설치하여 분리시켜야 한다. 다만, 연료유 탱크와 윤활유 탱크 사이의 격벽을 완전용입 용접하는 경우에는 코퍼댐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료유, (2) 윤활유 (3) 식물성 기름 (4) 청수 코퍼댐에는 공기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의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측의 구획이 공통경계를 갖지 아니 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배수설비가 제공되며, 적절한 검사, 유지보수 및 안전한 탈출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거밀구조이어야 한다. 코퍼댐은 액체탄화수소(연료유, 윤활유 포함)를 수용하는 구획과 〈청수(기관과 보일러를 구동하기 위한)를 수용하는 구획 및 소화용 액체포말을 수용하는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2021)* **16. 보이드 스페이스 또는 공소(Void space or Void)**라 함은 선박에서 폐위된 빈 공간을 말한다. *(2021)*	* 기술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 13편의 요건 대신 규칙 3편에 있는 코퍼댐 요건으로 대체함. -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후 문구 추가(13편의 요건 일부 추가) - 적용지침 부록 1-16에서 언급되는 Cofferdam과 Void에 대한 정의를 정할 필요성이 식별됨 - from IACS Rec. No.82 (Surveyors Glossary Hull Terms & Hull Survey Terms) - 문구 수정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1. 용어의 정의**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준** 〈생략〉 **2-1. 산적화물선(bulk carrier)** 〈생략〉 **2-2. 이중선체 산적화물선(double hull bulk carrier)** 〈생략〉 〈새롭게 추가〉 **3. ~ 20.** 〈생략〉 **규칙 7편 3장 "산적화물선" 1절 101. "적용"** 참조 **4.** 이 장의 규정은 이 100 m 이상과 250 m 이하인 보통의 선형을 갖고 선미에 기관을 비치하며 빌지호퍼 및 톱사이드탱크를 갖는 단일 갑판선으로서 화물창 내에는 이중저를 갖고 갑판 및 선저는 종식구조인 선박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호퍼타입 화물창과 화물의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시스템을 갖춘 선박인 SUBC(Self-Unloading Bulk Carrier, 자가 하역 산적화물선)**도 이 장의 규정을 따른다. **지침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참조 선종 5-3 Self-Unloading Bulk Carrier 'ESP'와 관련된 비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화물구역 내에 단일갑판, 이중저, 톱사이드탱크, 호퍼사이드탱크 및 단일 또는 이중 선측구조를 가지는 선박으로서 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고 자체 하역하는 선박에 'ESP'부호를 부기한다.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1. 용어의 정의**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2장 및 3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준** 〈현행과 동일〉 **2-1. 산적화물선(bulk carrier)** 〈현행과 동일〉 **2-2. 이중선체 산적화물선(double hull bulk carrier)** 〈현행과 동일〉 **2-3. 자가 하역 산적화물선(self-unloading bulk carrier)**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화물구역 내에 단일갑판, 이중저, 톱사이드탱크, 호퍼사이드탱크 및 단일 또는 이중선측구조를 가지고 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본선에 컨베이어시스템을 갖추고 규칙 **7편 3장**의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2021)* **3. ~ 20.** 〈현행과 동일〉	부산지부 개정요청서 (BSN4700-725-2020, 20.6.2)에 의거 - 문구 수정 - 선종 부기부호인 Self-Unloading Bulk Carrier가 규칙 1편에 언급되어 있으나, 관련 부기부호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추가내용은 별도 언급되지 않아, 적절한 확인검사 없이 해당 부기부호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부기부호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을 규칙에 마련 필요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1. 검사강화제도(enhanced survey programme)라 함은 **2장**의 규정에 추가하여 화물지역 내에 있는 화물창/탱크, 펌프실, 코퍼댐, 파이프터널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한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에 대하여 **3장**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검사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롭게 추가〉 예) **M/T "TAIHAI 1"(C/No. : 1700036, GT; 6,998 Tons)** 1) Class Notation : +KRS1 **OIL TANKER**(FAC) **PRODUCT/ASPHALT** CLEAN1 IWS ERS PSPC LI 참조 : : IACS UR 및 타 선급 규칙 The requirements apply to all self-propelled Bulk Carriers other than Double Skin Bulk Carriers as defined in 1.1.1 of UR Z10.5. (Z10.2) 1. The ship type notation "**BULK CARRIER**", or equivalent, and the notation "**ESP**" shall be **assigned to sea going self-propelled ships** which are constructed generally with single deck, double bottom, hopper side tanks and topside tanks and with single or double side skin construction in cargo length area and intended primarily to carry dry cargoes in bulk. **(UR Z11)** 2. An applicant is to **submit a Survey Programme** that details survey items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the **Special Survey** of **oil tankers, bulk carriers and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with integral tanks** and for the **IS** of **bulk carriers, oil tankers and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with integral tanks** over 10 years of age. To **ships which do not engage in international voyage and classed for restricted service**, such as having the class notation Coasting Service, Smooth Water Service, etc., **this requirement need not apply**. (NK) 3. **For ships with integral cargo tanks**, the service notation **oil tanker** is always completed by the additional service feature **ESP** (i.e. oil tanker ESP), which **means that these ships are submitted to the Enhanced Survey Program** as laid down in Ch 4, Sec 3. **(BV)** 현행 KR 규칙 : Oil Tanker중 모든 화물탱크가 독립형탱크로서 Asphalt만 운반하는 경우 및 독립형 Chemical 탱커에 한하여 ESP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ESP 제외 요건) 〈새롭게 추가〉 **43. 바람 및 물막이 스트레이크** 〈생략〉 **44. ~ 45.** 〈생략〉	**21. 검사강화제도(enhanced survey programme)**1)라 함은 **2장**의 규정에 추가하여 화물지역 내에 있는 화물창/탱크, 펌프실, 코퍼댐, 파이프터널 및 보이드스페이스와 모든 평형수탱크에 대한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에 대하여 **3장**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검사방법을 적용하는 제도를 것을 말한다. 또한, 해당 제도는 **3장**의 선종 중 화물지역 내에 일체형탱크를 가지는 선박에만 적용되며 **3장 102. 1**에 따라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박소유자는 우리 선급과 협의하여 상세한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대한민국 ~~한국~~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의 경우 **19절 1901.**의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2021)* **43. 스트레이크(Strake)**라 함은 종/횡 방향으로 이어진 외판, 갑판, 격벽 등의 단위 판을 말한다. *(2021)* **44. ~~43.~~ 바람 및 물막이 스트레이크** 〈현행과 동일〉 **45. ~~44.~~ ~ 46. ~~45.~~** 〈현행과 동일〉	IACS Survey Panel Chair 의 전자메일에 의거(Oct. 5 2019) - All the eleven members agreed with the view of RINA that oil tankers carrying oil in independent tanks not part of ship's hull such as asphalt carriers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ESP Code. - 문구 수정 **강화검사 (법 제42조, 시행규칙 제80조,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령 5년 미만의 선박과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유조선(아스팔트 운반선 포함), 모든 산적 화물선(화물구역 내에 있는 갑판이 단층구조이고 이중저, 톱사이드탱크, 호퍼 사이드탱크 및 단일 또는 이중선체구조를 가지는 선박) 및 위험물 산적 운송선 (독립형탱크 및 액화가스 산적운송선 제외)의 선박소유자는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한다. - 13편 1장 4절 표 7참조 - 문구 수정 - 번호 조정

(5-3)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지침요건을 규칙으로 이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102. 등록** 1. 우리 선급의 규칙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건조되고 검사를 받은 선박은 선급을 부여하고 선명록에 등록한다. 〈새롭게 추가〉 2. ~ 3. 〈생략〉	〈규칙〉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102. 등록** 1. 〈현행과 동일〉 2. 우리 선급기술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021)* ~~2~~ 3. ~ ~~3.~~ 4. 〈현행과 동일〉	- 지침에서 옮겨옴 - 번호 수정
〈적용지침〉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지침〉 **제 1 장 선급등록** **제 1 절 일반사항** *(2021)* ~~우리 선급의 규칙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05. 동등효력** *(2020)* **【지침 참조】** 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이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105. 동등효력** *(2021)* **【지침 참조】** 이 규칙에 만족하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대체설계 및 신기술이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고 :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KS, JIS, ASME 등)으로서, 선급기술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 (3)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105. 동등효력 【규칙 참조】** **규칙 105.**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KS, JIS, ASME 등)으로서, 선급기술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2020)* (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 (3)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2020)*	**〈적용지침〉** ~~**105. 동등효력 【규칙 참조】**~~ ~~**규칙 105.**에서 "이 규칙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된 국제 기준(ISO, IEC 등) 또는 국가 기준(KS, JIS, ASME 등)으로서, 선급기술규칙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2020)*~~ ~~(2)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된 경우, 또는~~ ~~(3)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검증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여기서 검증된 사용실적이라 함은 충분한 기간 동안 손상 없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한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4)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QSCS(Quality System Certification Scheme)에 적합함이 검증된 선급에서 이미 승인한 실적선의 동형선인 경우 *(2020)*~~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 (3) 기관부호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가 다음의 조건으로 우리 선급 규칙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 KRM 1 :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 KRM 0 :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는 선박 〈생략〉 (8) 추가특기사항 (2020) 특정 선종에 관계없이 요건에 적합하면 부여되며, 구조강도평가, 피로강도평가, 선체건조감시, 대빙구조, 수중검사, 산적화물선의 침수상태 종강도/허용적재하중/파형횡격벽 등을 표시하는 부기부호로서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새롭게 추가〉	**〈규칙〉**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지침 참조】** (3) 기관부호 (주 추진기관을 갖는 선박에만 적용한다) *(2021)* 기관장치 및 전기설비가 다음의 조건으로 우리 선급 규칙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부호 KRM 1 :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 KRM 0 :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는 선박 〈현행과 동일〉 (8) 추가특기사항 *(2020)* 특정 선종에 관계없이 요건에 적합하면 부여되며, 구조강도평가, 피로강도평가, 선체건조감시, 대빙구조, 수중검사, 산적화물선의 침수상태 종강도/허용적재하중/파형횡격벽 등을 표시하는 부기부호로서 특기사항 다음의 위치에 부기한다. (9)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는 **지침 부록 1-1**에 따른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 :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 설비부호의 부기상세"**
〈적용지침〉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규칙 참조】** 2. **규칙** 201.의 (3)호의 규정은 주추진기관을 갖는 선박에 적용한다. 3. 〈생략〉 4.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는 **지침 부록 1-1**의 규정에 따른다. *(2020)*	**〈적용지침〉** **제 2 절 선급부호** **201. 선급부호 *(2021)* 【규칙 참조】** ~~2. **규칙** 201.의 (3)호의 규정은 주추진기관을 갖는 선박에 적용한다.~~ 2. ~~3.~~ 〈현행과 동일〉 ~~4.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는 **지침 부록 1-1**의 규정에 따른다. *(2020)*~~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301. 제조중등록검사 【지침 참조】**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과정 시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306. 제반시험 【지침 참조】**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또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는 선내에 설치한 후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규칙〉**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301. 제조중등록검사 ~~【지침 참조】~~** *(2021)*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과정 시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 부록 1-12**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는 **지침 부록 1-12**에 따른다. **306. 제반시험** *(2021)* **【지침 참조】**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또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는 선내에 설치한 후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밀구획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는 **지침 부록 1-16**에 따른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2 :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6 :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적용지침〉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301. 제조중등록검사 【규칙 참조】** **부록 1-12**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는 **부록 1-12**에 따라야 한다. **306. 제반시험 【규칙 참조】** "수밀구획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는 **부록 1-16**에 따라야 한다. 또한 **규칙 306.**에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이라 함은 **규칙 6편 2장 302.** 및 **303.(규칙 9편**에서 정의하는 CMA선 또는 UMA선에 대하여는 **규칙 9편 3장 204.** 및 **205.)**의 시험을 말한다. *(2018)*	**〈적용지침〉** **제 3 절 제조중등록검사** *(2021)* **~~301. 제조중등록검사 【규칙 참조】~~** **~~부록 1-12~~**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는~~ **~~부록 1-12~~**~~에 따라야 한다.~~ **306. 제반시험** *(2021)* **【규칙 참조】** ~~"수밀구획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는 **부록 1-16**에 따라야 한다.~~ 또한 **규칙 306.**에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이라 함은 **규칙 6편 2장 302.** 및 **303.(규칙 9편**에서 정의하는 CMA선 또는 UMA선에 대하여는 **규칙 9편 3장 204.** 및 **205.)**의 시험을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307.복원성시험 【지침 참조】** 3. 1항에 의한 복원성자료의 보조수단으로서 복원성 계산기능을 갖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대표적인 운항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는 비손상, 손상 및 곡류 적재복원성 등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모든 복원성 관련규정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원성자료가 그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적하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일부 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본선 설치 후에는 승인된 계산결과에 따라 우리 선급 검사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추가〉	**〈규칙〉** **307.복원성시험 【지침 참조】** 3. 1항에 의한 복원성자료의 보조수단으로서 복원성 계산기능을 갖는 복원성 적하지침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대표적인 운항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는 비손상, 손상 및 곡류 적재복원성 등 해당 선박에 적용되는 모든 복원성 관련규정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원성자료가 그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적하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일부 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본선 설치 후에는 승인된 계산결과에 따라 우리 선급 검사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절차는 **지침 부록 1-10**에 따른다. *(2021)*	- 문구 수정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0 :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적용지침〉 **307. 복원성시험 【규칙 참조】** 3. **규칙 307.**의 2항에 따라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절차는 **지침 부록 1-10**에 따른다.	**〈적용지침〉** **307. 복원성시험** *(2021)* **【규칙 참조】** 3. ~~**규칙 307.**의 2항에 따라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승인절차는 **부록 1-10**에 따른다.~~	- 문구 수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2019) **【지침 참조】**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제 6 절 검사신청** **601. 등록검사 【지침 참조】**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제조자가,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규칙〉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2021)* ~~**【지침 참조】**~~ 선급증서, 단기선급증서, 건명서 및 검사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하고 우리 선급 검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내보관 방법으로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제 6 절 검사신청** **601. 등록검사** *(2021)* ~~**【지침 참조】**~~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제조자가, 제조후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접수 제출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접수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2.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3. 본선이 우리 선급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2020)*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규칙 참조]** *(2019)* **규칙** 505.에서 "건명서 및 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과 관련된 보관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보관 방법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보관 **제 6 절 검사신청** **601. 등록검사 【규칙 참조】** **규칙** 601.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본선이 우리 선급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적용지침〉 ~~**제 5 절 증서 및 보고서** *(2020)*~~ ~~**505. 증서 및 보고서의 보관 [규칙 참조]** *(2019)*~~ ~~**규칙** 505.에서 "건명서 및 보고서 등은 선장이 항시 선내에 보관"과 관련된 보관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보관 방법~~ ~~전자파일 또는 인쇄물 형태로 보관~~ ~~**제 6 절 검사신청**~~ ~~**601. 등록검사 【규칙 참조】**~~ ~~**규칙** 601.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본선이 우리 선급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602. 등록후 검사 【지침 참조】** 선급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선박의 검사는 선박소유자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추가〉 **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703. 검사협력** 4. 선박검사에 전문공급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전문공급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승인절차 및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규칙〉** **602. 등록후 검사** *(2021)* ~~**【지침 참조】**~~ 선급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선박의 검사는 선박소유자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접수 ~~제출~~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접수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2.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3. **규칙 9절**의 선급정지/탈급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703. 검사협력** 4. 선박검사에 전문공급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전문공급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승인절차 및 항목에 대하여는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602. 등록후 검사 【규칙 참조】** **규칙 602.**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규칙 9절**의 선급정지/탈급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702. 검사협력 【규칙 참조】** **규칙 7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을 말한다. *(2019)*	**〈적용지침〉** ~~**602. 등록후 검사 【규칙 참조】**~~ **규칙 602.**를 적용함에 있어서, 검사신청은 문서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검사신청서가 제출된 후 신청된 검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는 등 수검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검사수수료가 지불되지 아니한 경우, **규칙 9절**의 선급정지/탈급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등 기타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검사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제 7 절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702. 검사협력 【규칙 참조】**~~ **규칙 7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을 말한다. *(2019)*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1) ~ (5) 〈생략〉 (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 〈새롭게 추가〉 (7) **1장**, **70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중 "보고사항"에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우리 선급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2020)* (8)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1. 선급정지 및 회복** 2. 다음의 경우 우리 선급의 선급정지절차에 따라 선급이 정지될 수 있다. 선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기한이 지난 검사가 만족하게 조치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선급은 회복된다. 우리 선급이 결정한 선급정지는 선급정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발효되며 지정된 항목 및/또는 검사가 조치되어 선급이 회복될 때까지는 유효하다. (1) ~ (5) 〈현행과 동일〉 (6) 연차검사 시 지정된 또는 기한이 지난 계속검사항목이 검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기되지 아니한 경우 (7)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2021)* (8)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특별한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2021)* (9)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21)* (10) ~~(7)~~ **1장**, **70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협력의무 중 "보고사항"에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우리 선급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2020)* (11) ~~(8)~~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2. 탈급 *(2018)* 【규칙 참조】** 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 (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2018)*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18)*	**〈적용지침〉** **제 9 절 선급정지, 탈급 및 재등록** **902. 탈급 ~~*(2018)*~~ 【규칙 참조】** ~~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 ~~(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2018)*~~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18)*~~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902. 탈급 【지침 참조】** 1. 다음의 경우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 (1) ~ (2) 〈생략〉 (3)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4) 선박이 폐선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5) **2장 102.**에 규정된 선급유지를 위한 지정된 검사 시 우리 선급의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검사원이 보고한 경우 〈새롭게 추가〉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은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 〈새롭게 추가〉	**〈규칙〉** **902. 탈급 *(2021)* 【지침 참조】** 1. 다음의 경우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 (1) ~ (2) 〈현행과 동일〉 (3)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4) 선박이 폐선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5) **2장 102.**에 규정된 선급유지를 위한 지정된 검사 시 우리 선급의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검사원이 보고한 경우 (6)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7)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특별한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8)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은 해당선박을 탈급시킬 수 있다. **903. 탈급 유예 (Deferment for Class Withdrawal) *(2021)*** 1. 장기간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검사계획서 및 조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시,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의 탈급을 유예할 사킬 수 있다.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902. 탈급 *(2018)* 【규칙 참조】** 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 (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2018)*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18)* 2. 장기간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검사계획서 및 조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시,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의 **탈급을 유예**시킬 수 있다. *(2018)*	**〈적용지침〉** **902. 탈급 ~~*(2018)*~~ 【규칙 참조】** ~~1. 우리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선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선박을 선급정지 또는 탈급시킬 수 있다.~~ ~~(1) 항만국통제(PSC) 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으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선박~~ ~~(2) 기국으로부터 협약증서가 회수된 선박 또는 별 사유 없이 무국적 상태로 운항하는 선박 *(2018)*~~ ~~(3)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제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표(또는 공지)된 선박 *(2018)*~~ ~~2. 장기간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검사계획서 및 조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할 시, 선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선박의 탈급을 유예시킬 수 있다. *(2018)*~~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13 절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의 등록 1301. 등록 【지침 참조】 우리 선급은 신청에 따라 선박 이외에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이동식 해양구조물, 고정식 해양구조물, 준설선, 플로팅·독 및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하면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선급부호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규칙〉 제 13 절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의 등록 1301. 등록 *(2021)* 【지침 참조】 우리 선급은 신청에 따라 선박 이외에 이동식 해양굴착구조물, 이동식 해양구조물, 고정식 해양구조물, 준설선, 플로팅·독 및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하면 선명록에 등록하고 선급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하는 선급부호는 **지침 부록 1-1**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 :**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 부호의 부기상세"**
〈적용지침〉 제 13 절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의 등록 1301. 등록 【규칙 참조】 **규칙** 1301.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1을 말한다.	〈적용지침〉 제 13 절 기타의 장치 또는 설비의 등록 *(2021)* ~~1301. 등록 【규칙 참조】~~ ~~**규칙** 1301.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1을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5. 계선** *(2018)* **2.** 계선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계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선하였던 선박을 다시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운항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계선유지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계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6. 시험** **2.** 주기 및 보기 또는 조타장치에 대하여 중대한 수리를 하였을 때는 검사원이 해상시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5. 계선** *(2018)* **2.** 계선을 시작할 때에는 **지침 부록 1-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계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 **3.** 계선하였던 선박을 다시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 부록 1-17** ~~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운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 **5.** 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승인된 계선유지 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고 계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1)* **106. 시험** **2.** 주기 및 보기 또는 조타장치에 대하여 **"**중대한 수리**"**를 하였을 때는 검사원이 해상시운전을 요구할 수 있다. *(2021)* ~~**【저침 참조】**~~ 비고 : "중대한 수리"라 함은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교체,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 출력의 10% 이상 변경, 프로펠러의 형상 또는 주요치수 변경 및 조타장치 교체 또는 조타능력 변경 등과 같이 선속 또는 조타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를 말한다.	- 검사요건 명확히 함 *** 부록 1-17 : "선박의 계선 및 재운항"**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6. 시험 【규칙 참조】** **규칙 106.**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대한 수리"라 함은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교체,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 출력의 10% 이상 변경, 프로펠러의 형상 또는 주요치수 변경 및 조타장치 교체 또는 조타능력 변경 등과 같이 선속 또는 조타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를 말한다.	〈적용지침〉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2021)*** ~~**106. 시험 【규칙 참조】**~~ ~~**규칙 106.**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대한 수리"라 함은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교체,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 출력의 10% 이상 변경, 프로펠러의 형상 또는 주요치수 변경 및 조타장치 교체 또는 조타능력 변경 등과 같이 선속 또는 조타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를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07. 수리** 2. 허용한도를 넘어선 쇠모에 의해서 좌굴, 홈, 이탈 또는 파괴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지역의 쇠모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선체구조,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1) 선측외판 늑골, 그 단부고착부재 및 인접외판 (2) 갑판구조와 갑판 (3) 선저구조와 선저외판 (4) 수밀 또는 유밀격벽 (5) 창구덮개 및 창구코밍 (6) 202.의 1항 (1)호 (바), (사) 및 (6)호에 규정된 항목 〈생략〉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107. 수리** 2. 허용한도를 넘어선 쇠모에 의해서 좌굴, 홈, 이탈 또는 파괴 등의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지역(areas)의 쇠모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선체구조,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areas)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역(areas)은 **부록 1-18**을 참조한다. *(2021)* ~~**【지침 참조】**~~ (1) 선측외판 늑골, 그 단부고착부재 및 인접외판 (2) 갑판구조와 갑판 (3) 선저구조와 선저외판 (4) 수밀 또는 유밀격벽 (5) 창구덮개 및 창구코밍 (6) 202.의 1항 (1)호 (바), (사) 및 (6)호에 규정된 항목 〈현행과 동일〉 비고 : "선체구조,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선체구조에 좌굴, 홈, 이탈 또는 파괴 등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밀 또는 풍우밀 보전성을 상실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역(Space)**이라 함은 화물창, 탱크를 포함한 각각의 독립된 구획(compartment)을 말한다. : 영문 추가 (지역에 대한 영어 단어인 areas를 함께 표기) * 의심**지역**(Suspect **area**)이라 함은 과도한 부식이 있는 지역이나 급격한 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18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구역(구조부재)"**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107. 수리** 1. **규칙 107.**의 2항에서 "선체구조,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선체구조에 좌굴, 홈, 이탈 또는 파괴 등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밀 또는 풍우밀 보전성을 상실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규칙 107.**의 2항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부위는 **부록 1-18**을 참조한다. *(2019)* **【규칙 참조】**	**〈적용지침〉** **107. 수리** *(2021)* ~~1. **규칙 107.**의 2항에서 "선체구조, 수밀 또는 풍우밀의 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선체구조에 좌굴, 홈, 이탈 또는 파괴 등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수밀 또는 풍우밀 보전성을 상실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규칙 107.**의 2항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부위는 **부록 1-18**을 참조한다. *(2019)*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4. 또한 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식이 발견되어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결함이 본선의 감항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선의 운항 전에 보수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6. 항해 중 수리** (1) 선급유지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선체, 기관장치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를 선원이 항해 중에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수리의 범위 및 검사원의 입회 등을 포함한 수리절차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절차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위급상황인 경우 즉시 비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리는 본선의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하고 추가검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4. 또한 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식이 발견되어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결함이 본선의 항행적합성 ~~감항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선의 운항 전에 보수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결함이 본선의 항행적합성 ~~감항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검사결과 발견된 결함 및/또는 부식으로 인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항해 중 수리** (1) 선급유지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선체, 기관장치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를 선원이 항해 중에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고 수리의 범위 및 검사원의 입회 등을 포함한 수리절차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절차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위급상황"인 경우 즉시 비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리는 본선의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하고 추가검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긴급을 요하는 위급상황"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 생존, 해양오염 및 화물의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선급검사정보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감항성→항행적합성으로 용어가 대체됨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3. 규칙 107.의 4항에서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결함이 본선의 감항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검사결과 발견된 결함 및/또는 부식으로 인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규칙 107.의 6항 (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위급상황"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 생존, 해양오염 및 화물의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3. 규칙 107.의 4항에서 "검사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결함이 본선의 감항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검사결과 발견된 결함 및/또는 부식으로 인하여 본선이 의도하는 항해나 운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검사원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규칙 107.의 6항 (1)호에서 "긴급을 요하는 위급상황"이라 함은 선박의 조종, 생존, 해양오염 및 화물의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08. 부재의 쇠모한도** *(2018)* **【지침 참조】** 선체 각 부재의 두께나 의장품의 치수 등이 쇠모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재의 건조 당시의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의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 시에 규정을 상회하는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쇠모의 위치, 범위 및 종류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작할 수 있다.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108. 부재의 쇠모한도** *(2021)* ~~**【지침 참조】**~~ 선체 각 부재의 두께나 의장품의 치수 등이 쇠모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부재의 건조 당시의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의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 시에 규정을 상회하는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쇠모의 위치, 범위 및 종류 등에 따라서 적절히 참작할 수 있다. 비고 :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칙 2편** 및 **3편 등의 선급기술규칙**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108. 부재의 쇠모한도 【규칙 참조】** **규칙 108.**에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칙 2편** 및 **3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지침〉** ~~**108. 부재의 쇠모한도 【규칙 참조】**~~ ~~**규칙 108.**에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치수" 또는 "우리 선급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칙 2편** 및 **3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09. 검사계획회의 및 안전회의 *(2018)***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하여 정기, 중간 또는 연차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원, 선박소유자, 해당되는 경우 두께계측요원/그 외의 전문공급자 및 선장 또는 선장이나 회사에 의하여 지명되고 적절히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검사계획서(ESP 선박만 해당됨) 또는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계획된 모든 준비가 제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계획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110. 두께계측 절차 (2018) 【지침 참조】** **1.** 우리 선급이 자체적으로 두께계측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원이 승선하여 계측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께계측과정의 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 **109. 검사계획회의 및 안전회의 *(2018)***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를 위하여 정기, 중간 또는 연차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원, 선박소유자, 해당되는 경우 두께계측요원/그 외의 전문공급자 및 선장 또는 선장이나 회사에 의하여 지명되고 "적절히 자격을 갖춘 대리인"은 검사계획서(ESP 선박만 해당됨) 또는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계획된 모든 준비가 제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계획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적절히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라 함은 본선의 사관을 말한다. **110. 두께계측 절차 *(2021)* ~~【지침 참조】~~** **1.** 우리 선급이 자체적으로 두께계측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원이 승선하여 계측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께계측과정의 통제방법에 대하여는 **지침 부록 1-5**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적용지침〉 **109. 검사계획회의 및 안전회의 *(2018)* 【규칙 참조】** **1. 규칙 109.**의 **2**항에서 "적절히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라 함은 본선의 사관을 말한다. **110. 두께계측 절차 *(2018)* 【규칙 참조】** **1.** 두께계측에 대한 요령은 **지침 부록 1-5**에 따른다.	**〈적용지침〉** ~~**109. 검사계획회의 및 안전회의 *(2018)* 【규칙 참조】**~~ ~~**1. 규칙 109.**의 **2**항에서 "적절히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라 함은 본선의 사관을 말한다.~~ ~~**110. 두께계측 절차 *(2018)* 【규칙 참조】**~~ ~~**1.** 두께계측에 대한 요령은 **지침 부록 1-5**에 따른다.~~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규칙〉**	
113. 공동선급선의 유지 *(2019)* **【지침 참조】** 1. 공동선급선의 경우 우리선급과 공동선급간에 채택된 협정에 따라 선급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공동선급선의 유지(정기적 검사 등)시 업무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새롭게 추가〉	**113. 공동선급선의 유지** *(2021)* ~~**【지침 참조】**~~ 1. 공동선급선의 경우 우리선급과 공동선급간에 채택된 협정에 따라 선급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공동선급선의 유지(정기적 검사 등)시 업무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3. 공동선급선이라고 할지라도 문서화된 협정이 없는 선박은 중복선급선으로 취급한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114. 검사준비 *(2019)* **1. 검사조건**(Conditions for survey) (7) 냉장화물구역의 대표적인 위치에서 방열재 뒤의 도장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검사는 보호도장의 유효성 및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축소할 수 있다. 도장이 불량한 상태인 경우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검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태는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검사 도중 변형, 스크래치 등이 외판의 바깥쪽으로부터 발견된 경우 판 및 인접한 늑골까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요구하는 만큼 그 부위의 방열재를 떼어내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114. 검사준비** *(2019)* **1. 검사조건**(Conditions for survey) (7) 냉장화물구역의 대표적인 위치에서 방열재 뒤의 도장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검사는 보호도장의 유효성 및 육안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축소할 수 있다. 도장이 불량한 상태인 경우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검사를 확대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태는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검사 도중 변형, 스크래치 등이 외판의 바깥쪽으로부터 발견된 경우 판 및 인접한 늑골까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검사원이 요구하는 만큼 그 부위의 방열재를 떼어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방열재 뒤 불량한 상태인 도장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열재의 범위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적용지침〉**	
113. 공동선급선의 유지 (2019) **【규칙 참조】** 1. 공동선급선이라고 할지라도 문서화된 협정이 없는 선박은 중복선급선으로 취급한다. *(2019)*	~~**113. 공동선급선의 유지 (2019) 【규칙 참조】**~~ ~~1. 공동선급선이라고 할지라도 문서화된 협정이 없는 선박은 중복선급선으로 취급한다. *(2019)*~~	- 규칙으로 이동함
114. 검사의 준비 2. **규칙 114.**의 1항 (7)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방열재 뒤 불량한 상태인 도장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열재의 범위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114. 검사의 준비** *(2021)* ~~2. **규칙 114.**의 1항 (7)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방열재 뒤 불량한 상태인 도장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열재의 범위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2 절 연차검사**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23.**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규칙〉** **제 2 절 연차검사**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23.**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지침 부록 1-9**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 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지침〉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2. 규칙 203.**의 23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3. ~ 4. 〈생략〉	**〈적용지침〉** **2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2021)* ~~**2. 규칙 203.**의 23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3.~~ ~ 3. ~~4.~~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3 절 중간검사** **301. 검사시기** 3. 연차검사의 요건에 추가된 중간검사 사항의 일부항목은 2번째 또는 3번째 연차검사 시기 또는 그 사이에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1항에서 정하는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3 절 중간검사** **301. 검사시기** 3. 연차검사의 요건에 추가된 **"**중간검사 사항의 일부**"**항목은 2번째 또는 3번째 연차검사 시기 또는 그 사이에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1항에서 정하는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중간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중간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중간검사사항의 일부로서의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3 절 중간검사** **301. 검사시기 【규칙 참조】** **규칙 301.**의 3항에서 "중간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중간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중간검사사항의 일부로서의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적용지침〉** **제 3 절 중간검사** *(2021)* ~~**301. 검사시기 【규칙 참조】**~~ ~~**규칙 301.**의 3항에서 "중간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중간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중간검사사항의 일부로서의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7.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검사시기** 4. 정기검사는 4번째 연차검사 시기부터 입거검사, 구획검사 및 두께계측 등을 포함한 검사를 시작하여 정기검사 지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7.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지침 부록 1-9**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검사시기** 4. 정기검사는 4번째 연차검사 시기부터 입거검사, 구획검사 및 두께계측 등을 포함한 검사를 시작하여 정기검사 지정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 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8. **규칙 303.**의 7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검사시기** 2. **규칙 401.**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303. 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2021)* 8. **규칙 303.**의 7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검사시기** *(2021)* 2. **규칙 401.**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5. 정기검사 사항의 일부를 4번째 연차검사 시기보다 앞당겨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일자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해당 정기검사 사항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5. "정기검사 사항의 일부"를 4번째 연차검사 시기보다 앞당겨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일자로부터 15개월 이내에 해당 정기검사 사항을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2021)* ~~**【자침 참조】**~~ 비고 : 1)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2) "정기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정기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 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5) **규칙 403.**의 1항 (3)호의 검사 (6) **규칙 5-2절 3**항의 검사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401. 검사시기** 1. **규칙 401.**의 5항에서 "정기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정기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 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규칙 참조】**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5) **규칙 403.**의 1항 (3)호의 검사 (6) **규칙 5-2절 3**항의 검사 2. **규칙 401.**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규칙 참조】** 3. ~ 4. 〈생략〉	**〈적용지침〉** **401. 검사시기** *(2021)* ~~1. **규칙 401.**의 5항에서 "정기검사 사항의 일부"라 함은 정기검사에서 요구하는 검사 사항 중 다음의 검사를 말한다. **【규칙 참조】**~~ ~~(1) 구획검사 사항(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구획은 제외한다)~~ ~~(2) 두께계측~~ ~~(3) 입거검사(다만, 매 정기적 검사 시 마다 입거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4) 기관장치 개방검사(다만, CMS 또는 PMS 대상선박은 제외한다)~~ ~~(5) **규칙 403.**의 1항 (3)호의 검사~~ ~~(6) **규칙 5-2절 3**항의 검사~~ ~~2. **규칙 401.**의 4항 및 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객선, 잠수선, 원자력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고속선은 제외한다. **【규칙 참조】**~~ 1. ~~3.~~ ~ 2. ~~4.~~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4.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규칙〉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4.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지침 부록 1-9**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 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지침〉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10. 규칙 5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적용지침〉 제 5-1 절 정기검사(기관, 전기 및 추가설비) 502. 검사사항 *(2021)* ~~10. 규칙 502.의 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2018)*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6 절 입거검사** **603. 검사사항** 2. 외판에 대하여는 과도한 부식, 결함이나 좌초 시 접촉으로 인한 결함, 변형 및 좌굴 등을 검사한다. 빌지킬은 특히 주의해서 검사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6. 사이드스러스터 및 횡요감쇠장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한다. (워터제트 추진장치, 선회식 추진장치, 수직축 프로펠러와 같이) 조종특성을 갖는 기타의 추진장치에 대하여 기어하우징, 프로펠러날개, 볼트잠김 및 기타 조임장치의 상태에 주목하여 외관검사를 하고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축 및 조타컬럼(steering column)의 밀봉장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규칙〉** **제 6 절 입거검사** **603. 검사사항** 2. 외판에 대하여는 과도한 부식, 결함이나 좌초 시 접촉으로 인한 결함, 변형 및 좌굴 등을 검사한다. 빌지킬은 "특히 주의"해서 검사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특히 주의"라 함은 빌지외판과 빌지킬의 연결부에 대하여 주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이드스러스터 및 횡요감쇠장치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한다. (워터제트 추진장치, 선회식 추진장치, 수직축 프로펠러와 같이) 조종특성을 갖는 기타의 추진장치에 대하여 기어하우징, 프로펠러날개, 볼트잠김 및 기타 조임장치의 상태에 주목하여 외관검사를 하고 프로펠러날개, 프로펠러축 및 조타컬럼(steering column)의 밀봉장치를 검증하여야 한다. 또한 **지침 부록 1-9**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 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지침〉 **제 6 절 입거검사** **603. 검사사항** 1. **규칙 603.**의 2항에서 "특히 주의"라 함은 빌지외판과 빌지킬의 연결부에 대하여 주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 4. 〈생략〉 5. **규칙 603.**의 6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생략〉	**〈적용지침〉** **제 6 절 입거검사** **603. 검사사항** *(2021)* ~~1. **규칙 603.**의 2항에서 "특히 주의"라 함은 빌지외판과 빌지킬의 연결부에 대하여 주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2.~~ ~ 3. ~~4.~~ 〈현행과 동일〉 ~~5. **규칙 603.**의 6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6.~~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604. 수중검사** 1.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5년의 정기검사 기간 이내의 2회의 입거검사 중 정기검사 사이의 중간에 해당되는 입거검사를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중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러한 수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선급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령이 15년 이상인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선박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중검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604. 수중검사** 1.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5년의 정기검사 기간 이내의 2회의 입거검사 중 정기검사 사이의 중간에 해당되는 입거검사를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중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러한 수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선급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령이 15년 이상인 검사강화제도(ESP) 부호를 갖는 선박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중검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별도의 승인"을 하는 경우 검사현황, 전회 입거검사 보고서 및 두께계측기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604. 수중검사** 1. **규칙 604.**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승인을 하는 경우 검사현황, 전회 입거검사 보고서 및 두께계측기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칙 참조】** 2. **〈생략〉**	**〈적용지침〉** **604. 수중검사** *(2021)* ~~1. **규칙 604.**의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승인을 하는 경우 검사현황, 전회 입거검사 보고서 및 두께계측기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칙 참조】**~~ 1. ~~2.~~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3. 입거검사를 수중검사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8) 선급부호의 추가특기사항 중 IWS 부호를 갖고자 하는 선박은 상기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구조 및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다) (라)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되는 선박 또는 새로이 IWS 부호를 갖고자 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a) ~ (b) (c) 잠수부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재흘수선 아래의 외판에는 종격벽과 횡격벽의 위치 및 내부구역, 해수흡입 및 선외배출용 개구의 명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용접비드나 중심펀치, 그리고 대비되는 색상의 도장으로 할 수 있다. 오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다른 적절한 장치나 수단도 동등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3. 입거검사를 수중검사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8) 선급부호의 추가특기사항 중 IWS 부호를 갖고자 하는 선박은 상기의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구조 및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 (다) (라)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되는 선박 또는 새로이 IWS 부호를 갖고자 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a) ~ (b) (c) 잠수부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만재흘수선 아래의 외판에는 종격벽과 횡격벽의 위치 및 내부구역, 해수흡입 및 선외배출용 개구의 명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용접비드나 중심펀치, 그리고 대비되는 색상의 도장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와 다른 적절한 장치나 수단도 동등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잠수부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판, 신호장치 및/또는 위치정보장치 등이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3. 규칙 604.의 3항 (8)호 (라) (c)에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잠수부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판, 신호장치 및/또는 위치정보장치 등이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3. ~~규칙 604.~~의 ~~3~~항 ~~(8)~~호 ~~(라) (c)~~에서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잠수부가 선박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판, 신호장치 및/또는 위치정보장치 등이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7 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지침 참조】** 2.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규칙〉** **제 7 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지침 참조】** 2.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지침 부록 1-9**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 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적용지침〉 **제 7 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규칙 참조】** 1. **규칙 701.**의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2. ~ 3. 〈생략〉	**〈적용지침〉** **제 7 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2021)* **【규칙 참조】** ~~1. 규칙 701.의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9를 말한다.~~ 1. ~~2.~~ ~ 2. ~~3.~~ *(2021)*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902. 검사사항 【지침 참조】** 1. CMS의 검사절차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기관장치를 개방하여 자격이 인정된 기관장이 확인 점검한 경우에는 그 개방검사를 CMS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점검 대상 중 주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2순회 중 최소 1회는 우리 선급 검사원에 의한 개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902. 검사사항 【지침 참조】** 1. CMS의 검사절차는 **지침 부록 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2. **지침 부록 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기관장치를 개방하여 자격이 인정된 기관장이 확인 점검한 경우에는 그 개방검사를 CMS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점검 대상 중 주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2순회 중 최소 1회는 우리 선급 검사원에 의한 개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7**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절차(CMS)"**
〈적용지침〉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902. 검사사항 【규칙 참조】** 1. **규칙 902.**의 1항 및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7**을 말한다. 2. ~ 5. 〈생략〉	**〈적용지침〉** **제 9 절 기관장치의 계속검사** **902. 검사사항 *(2021)* 【규칙 참조】** ~~1.~~ **~~규칙 902.~~**~~의 1~~항 및 ~~2~~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7**~~을 말한다. 1. ~~2.~~ ~ 4. ~~5.~~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903. 예방정비제도** 1.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MS 대신에 예방정비제도(이하 "PMS"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객선은 PMS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령이 15년을 넘는 선박에 대하여 본선 현상에 따라 PMS 검사를 특별히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방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침 참조】 3. PMS를 승인받은 선박으로 승인한 상태감시장치(이하 "CM"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규칙〉** **903. 예방정비제도** 1.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침 부록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MS 대신에 예방정비제도(이하 "PMS"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객선은 PMS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선령이 15년을 넘는 선박에 대하여 본선 현상에 따라 PMS 검사를 특별히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방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3. PMS를 승인받은 선박으로 승인한 상태감시장치(이하 "CM"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지침 부록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8 "예방정비제도 절차 (PMS)"**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903. 예방정비제도** 1. **규칙 903.**의 1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8**을 말하며,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 의 6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생략〉 3. **규칙 903.**의 3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4. ~ 5. 〈생략〉	**〈적용지침〉** **903. 예방정비제도** 1. **규칙 903.**의 1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8**을 말하며,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침 1장 801.** 의 6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021)* 【규칙 참조】 2. 〈현행과 동일〉 3. **규칙 903.**의 3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3. ~~4.~~ 4. ~ 4. ~~5.~~ 5.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 **1502. 연차검사** **6.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과도한 부식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가 두께계측은 **표 1.2.5**에 따를 수 있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연차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새롭게 추가〉** **1504. 정기검사** **표 1.2.8 일반건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6)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규칙〉** **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 **1502. 연차검사** **6.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과도한 부식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가 두께계측은 **표 1.2.5**에 따를 수 있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연차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1504. 정기검사** **표 1.2.8 일반건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6)은 **지침 부록 1-6, 1항 (1)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위"**
〈적용지침〉 **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 **1502. 연차검사** **2. 규칙 1502.**의 6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3.** 〈생략〉 **1504. 정기검사** *(2017)* **5. 규칙 표 1.2.8**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1)호와 같다. *(2017)* **【규칙 참조】**	**〈적용지침〉** **제 15 절 일반건화물선의 선체검사** **1502. 연차검사** *(2021)* ~~**2. 규칙 1502.**의 6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2.** ~~**3.**~~ 〈현행과 동일〉 **1504. 정기검사** *(2021)* ~~**5. 규칙 표 1.2.8**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1)호와 같다. *(2017)*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 **1602. 연차검사** **6.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과도한 부식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가 두께계측은 **표 1.2.5**에 따를 수 있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연차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 **1602. 연차검사** **6.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과도한 부식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가 두께계측은 **표 1.2.5**에 따를 수 있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연차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 **1602. 연차검사 【규칙 참조】** 1. **규칙** 1602.의 6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2. **〈생략〉**	**〈적용지침〉** **제 16 절 액화가스 산적운반선의 선체검사** **1602. 연차검사 *(2021)* 【규칙 참조】** ~~1. **규칙** 1602.의 6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1. ~~2.~~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2. 연차검사** **4. 구조에 대한 시험** 선수문, 내측문, 현측문 및 선미문은 다음에 특히 주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균열이 발견된 경우 그 주위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고,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2. 연차검사** **4. 구조에 대한 시험** 선수문, 내측문, 현측문 및 선미문은 다음에 특히 주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동일〉 균열이 발견된 경우 그 주위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고,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2. 연차검사** 1. **규칙 1702.**의 4항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 3. 〈생략〉	**〈적용지침〉** **제 17 절 로로선의 현측문 및 내측문 등에 대한 검사요건** **1702. 연차검사** ~~1. 규칙 1702.의 4항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2.~~ ~ 2. ~~3.~~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703. 정기검사** 3. 선수문, 내측문, 현측문 및 선미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용접을 포함하여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에 대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비파괴시험 및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균열이 발견된 경우 그 주위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고,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도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3) 힌지암,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의 최대쇠모한도는 우리 선급이 1차 구조부재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건조두께의 15% 또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최대쇠모한도 중 적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선급은 특정 설계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1703. 정기검사** 3. 선수문, 내측문, 현측문 및 선미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용접을 포함하여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에 대하여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1]까지 비파괴시험 및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균열이 발견된 경우 그 주위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고,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2]에 대하여도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1)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정밀검사 결과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의심되는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를 말한다. 2)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3) 힌지암,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의 최대쇠모한도는 우리 선급이 1차 구조부재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나 건조두께의 15% 또는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최대쇠모한도" 중 적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선급은 특정 설계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최대쇠모한도"는 제조자의 요건에 따른다.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1703. 정기검사** 1. **규칙 1703.**의 3항 (2)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정밀검사 결과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의심되는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를 말한다. 2. **규칙 1703.**의 3항 (2)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규칙 참조】** 3. **규칙 1703.**의 3항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최대쇠모한도"는 제조자의 요건에 따른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1703. 정기검사**~~ ~~1. **규칙 1703.**의 3항 (2)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라 함은 정밀검사 결과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의심되는 잠금장치, 지지장치 및 고정장치를 말한다.~~ ~~2. **규칙 1703.**의 3항 (2)호에서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부분"이라 함은 균열이 발견된 부위와 유사한 구조 또는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사한 균열이 의심되는 부분을 말한다. **【규칙 참조】**~~ ~~3. **규칙 1703.**의 3항 (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최대쇠모한도"는 제조자의 요건에 따른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2. 검사준비** 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 (5) 검사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 부록 1-3**의 1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절차는 권고사항으로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선급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2. 검사준비** 1. 검사계획서(survey programme) (5) 검사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 부록 1-3**의 1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절차는 권고사항으로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리 선급의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우리 선급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식별, 의심지역의 선정 및 쇠모 또는 손상을 받기 쉽거나 그 사례가 입증된 구조부재 또는 구조부재의 일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102. 검사준비** *(2018)* 1. **규칙 102.**의 1항 (5)호에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식별, 의심지역의 선정 및 쇠모 또는 손상을 받기 쉽거나 그 사례가 입증된 구조부재 또는 구조부재의 일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생략〉	〈적용지침〉 **제 3 장 검사강화제도 적용대상선박의 선체검사** **제 1 절 일반사항** *(2021)* **102. 검사준비** *(2021)* ~~1. **규칙 102.**의 1항 (5)호에서 "우리 선급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식별, 의심지역의 선정 및 쇠모 또는 손상을 받기 쉽거나 그 사례가 입증된 구조부재 또는 구조부재의 일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1. ~~2.~~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103. 선내 비치서류(documentation on board)** 3. 기타 서류(supporting documents) (1) 선내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활성가스장치 사용범위 및 탱크세정 절차 (마) 다음 사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지침 참조】** (a) 일반적인 구조결함 (b) 격벽 및 관장치의 누설 (c) 있는 경우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 *(2019)* 〈생략〉 **104. 두께계측 절차 【지침 참조】** 1. 일반 (1) **2장 1절 110.** 두께계측 절차에 따른다. *(2018)*	**〈규칙〉** **103. 선내 비치서류(documentation on board)** 3. 기타 서류(supporting documents) (1) 선내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불활성가스장치 사용범위 및 탱크세정 절차 (마) 다음 사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작성에 대한 지침은 **지침 부록 1-4** "선박소유자 검사기록부"를 참조) *(2021)* ~~**【지침 참조】**~~ (a) 일반적인 구조결함 (b) 격벽 및 관장치의 누설 (c) 있는 경우 부식방지시스템의 상태 *(2019)* 〈현행과 동일〉 **104. 두께계측 절차** ***(2021)*** ~~**【지침 참조】**~~ 1. 일반 (1) **2장 1절 110.** 두께계측 절차에 따른다. *(2018)*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103. 선내 비치서류 【규칙 참조】** **규칙 103.**의 3항 (1)호 (마)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작성에 대한 지침은 **지침 부록 1-4**와 같다. **104. 두께계측 절차 【규칙 참조】** 두께계측에 대한 요령은 **지침 부록 1-5**에 따른다.	**〈적용지침〉** ~~**103. 선내 비치서류 【규칙 참조】**~~ ~~**규칙 103.**의 3항 (1)호 (마)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검사기록부 작성에 대한 지침은 **지침 부록 1-4**와 같다.~~ ~~**104. 두께계측 절차 【규칙 참조】**~~ ~~두께계측에 대한 요령은 **지침 부록 1-5**에 따른다.~~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 2장 110으로 통합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2 절 산적화물선** **202. 연차검사** 4. 화물창 검사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비고) 2)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지침 참조】**	**〈규칙〉** **제 2 절 산적화물선** **202. 연차검사** 4. 화물창 검사 *(2021)*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비고) 2)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4**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5.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새롭게 추가〉**	5.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4**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2 절 산적화물선** **202. 연차검사** 3. **규칙 2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4. 〈생략〉 5. **규칙 202.**의 4항 및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생략〉	**〈적용지침〉** **제 2 절 산적화물선** **202. 연차검사** *(2021)* ~~3. **규칙 2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3. ~~4.~~ 〈현행과 동일〉 ~~5. **규칙 202.**의 4항 및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6.~~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203. 중간검사** 4. 두께계측 범위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다)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다음에 따를 수 있다. **【지침 참조】**	**〈규칙〉** **203. 중간검사** 4. 두께계측 범위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다)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4**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다음에 따를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적용지침〉 **203. 중간검사** **5. 규칙 203.**의 4항 (1)호 (다)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203. 중간검사** *(2021)* ~~**5. 규칙 203.**의 4항 (1)호 (다)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204. 정기검사** 5.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계측요건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지침 참조】** (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표 1.3.1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5)는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규칙〉** **204. 정기검사** 5.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계측요건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2021)* **【지침 참조】** (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표 1.3.1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5)는 **지침 부록 1-6, 1항 (2)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재"**
〈적용지침〉 **204. 정기검사** **3. 규칙 204.**의 5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생략〉 **5. 규칙 204.**의 5항 (6)호에서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규칙 표 1.3.1**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2)호와 같다. **【규칙 참조】** 7. 〈생략〉	**〈적용지침〉** **204. 정기검사** ***(2021)*** ~~**3. 규칙 204.**의 5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4**를 말한다. **【규칙 참조】**~~ 3. ~~4.~~ 〈현행과 동일〉 ~~**5. 규칙 204.**의 5항 (6)호에서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규칙 표 1.3.1**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2)호와 같다. **【규칙 참조】**~~ 4. ~~7.~~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3 절 유조선** **3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3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3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3 절 유조선** **3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3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3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5**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3 절 유조선** **302. 연차검사 【규칙 참조】** 1. **규칙 3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2. 〈생략〉 3. **규칙 3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5**를 말한다.	**〈적용지침〉** **제 3 절 유조선** **302. 연차검사 *(2021)* 【규칙 참조】** ~~1. **규칙 3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1. ~~2.~~ 〈현행과 동일〉 ~~3. **규칙 3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5**를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3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원유세정장치(COW)의 관장치 포함)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3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원유세정장치(COW)의 관장치 포함)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 을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304. 정기검사** **1. 규칙 3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생략〉	**〈적용지침〉** **304. 정기검사** ***(2021)*** ~~**1. 규칙 3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2.**~~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지침 참조】** (6) 두 개 또는 세 개의 횡단면을 측정하는 경우 최소한 한 개는 중앙부 $0.5L$ 내의 평형수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3편 1장 103.**에 정의된) 건현용 길이(L_f)가 130 m이상이고 선령이 10년을 넘는 유조선인 경우 **106.**의 1항 (2)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표 1.3.4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6)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지침 부록 1-5**의 **표 15**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2021)* **~~【지침 참조】~~【자침 참조】** (6) 두 개 또는 세 개의 횡단면을 측정하는 경우 최소한 한 개는 중앙부 $0.5L$ 내의 평형수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3편 1장 103.**에 정의된) 건현용 길이(L_f)가 130 m이상이고 선령이 10년을 넘는 유조선인 경우 **106.**의 1항 (2)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지침 부록 1-5**의 **6**항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표 1.3.4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6)는 **지침 부록 1-6, 1항 (3)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재"**
〈적용지침〉 **3. 규칙 3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5**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생략〉 **5. 규칙 304.**의 **4**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6**항을 말한다. **【규칙 참조】** **6. ~ 7.** 〈생략〉 **8. 규칙 표 1.3.4**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3)호와 같다. **【규칙 참조】** **9.** 〈생략〉	**〈적용지침〉** ~~**3. 규칙 3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5**를 말한다. **【규칙 참조】**~~ **2.** ~~**4.**~~ 〈현행과 동일〉 ~~**5. 규칙 304.**의 **4**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6**항을 말한다. **【규칙 참조】**~~ **3.** ~~**6.**~~ ~ **4.** ~~**7.**~~ 〈현행과 동일〉 ~~**8. 규칙 표 1.3.4**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3)호와 같다. **【규칙 참조】**~~ **5.** ~~**9.**~~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4 절 케미컬탱커** **4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4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4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4 절 케미컬탱커** **4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4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4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6**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4 절 케미컬탱커** **402. 연차검사 【규칙 참조】** 1. **규칙 4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2. 〈생략〉 3. **규칙 4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6**을 말한다.	**〈적용지침〉** **제 4 절 케미컬탱커** **402. 연차검사 *(2021)* 【규칙 참조】** ~~1. **규칙 4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1. ~~2.~~ 〈현행과 동일〉 ~~3. **규칙 4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6**을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4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4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404. 정기검사** **1. 규칙 4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 3.** 〈생략〉	**〈적용지침〉** **404. 정기검사** ***(2021)*** ~~**1. 규칙 4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2.**~~ **~ 2.** ~~**3.**~~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지침 참조】** **표 1.3.7 케미컬탱커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1) 단일선체 케미컬탱커 (비고) 1) 상기 표에서 (*A)부터 (*D)는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표 1.3.7 케미컬탱커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계속) **【지침 참조】** 2) 이중선체 케미컬탱커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7)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지침 부록 1-5**의 **표 16**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2021)* ~~**【지침 참조】**~~ **표 1.3.7 케미컬탱커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1) 단일선체 케미컬탱커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A)부터 (*D)는 **지침 부록 1-6, 1항 (4)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표 1.3.7 케미컬탱커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계속) **【지침 참조】** 2) 이중선체 케미컬탱커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7)는 **지침 부록 1-6, 1항 (4)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재"**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4. **규칙 4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6**을 말한다. **【규칙 참조】** 5. ~ 7. 〈생략〉 8. **규칙 표 1.3.7**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4)호와 같다. **【규칙 참조】** 9. 〈생략〉	**〈적용지침〉** ~~4. **규칙 4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6**을 말한다. **【규칙 참조】**~~ 4. ~~5.~~ ~ 6. ~~7.~~ 〈현행과 동일〉 ~~8. **규칙 표 1.3.7**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4)호와 같다. **【규칙 참조】**~~ 7. ~~9.~~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5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5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5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502. 연차검사** 5.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504.의 2항 참조) 및 중간검사(503.의 3항 참조)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502. 연차검사 【규칙 참조】** 1. **규칙 5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2. 〈생략〉 3. **규칙 5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7**을 말한다.	**〈적용지침〉** **제 5 절 이중선체 유조선** **502. 연차검사 *(2021)* 【규칙 참조】** ~~1. **규칙 5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1. ~~2.~~ 〈현행과 동일〉 ~~3. **규칙 502.**의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7**을 말한다.~~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5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원유세정장치(COW)의 관장치 포함)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504. 정기검사** **1. 일반** (4) 갑판상의 화물관장치(원유세정장치(COW)의 관장치 포함) 및 (3)호에서 정하는 구역 내의 화물 및 평형수 관장치에 대하여 밀폐성 및 만족한 상태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고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하여 검사원이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탱크 내의 평형수관장치와 평형수탱크 및 보이드스페이스 내의 화물관장치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이러한 관장치(밸브 및 관부착품 포함)를 개방하는 모든 경우 검사원에게 알려서 내부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504. 정기검사** **1. 규칙 5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생략〉	**〈적용지침〉** **504. 정기검사** ~~**1. 규칙 504.**의 1항 (4)호에서 사용압력으로 작동시험을 할 때는 누설이나 과도한 진동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2.**~~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지침 참조】** (6) 두 개 또는 세 개의 횡단면을 측정하는 경우 최소한 한 개는 중앙부 $0.5L$ 내의 평형수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3편 1장 103.**에 정의된) 건현용 길이(L_f)가 130 m이상이고 선령이 10년을 넘는 유조선인 경우 **106.**의 1항 (2)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106.**의 1항 (4)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 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지침 참조】** **표 1.3.10 이중선체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7)은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규칙〉** **4.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두께계측요건은 **지침 부록 1-5**의 **표 17**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2021)* ~~**【지침 참조】**~~ (6) 두 개 또는 세 개의 횡단면을 측정하는 경우 최소한 한 개는 중앙부 $0.5L$ 내의 평형수탱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3편 1장 103.**에 정의된) 건현용 길이(L_f)가 130 m이상이고 선령이 10년을 넘는 유조선인 경우 **106.**의 1항 (2)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지침 부록 1-5**의 **6**항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106.**의 1항 (4)호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종강도평가를 위한 두께계측의 샘플링방법은 **지침 부록 1-5**의 **6**항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021)* ~~**【지침 참조】**~~ **표 1.3.10 이중선체 유조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1] **【지침 참조】**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7)은 **지침 부록 1-6, 1항 (5)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재"**
〈적용지침〉 3. **규칙 5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7**을 말한다. **【규칙 참조】** 4. 〈생략〉 5. **규칙 504.**의 4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6**항을 말한다. **【규칙 참조】** 6. ~ 7. 〈생략〉 8. **규칙 표 1.3.10**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5)호와 같다. **【규칙 참조】** 9. 〈생략〉	**〈적용지침〉** ~~3. **규칙 504.**의 4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7**을 말한다. **【규칙 참조】**~~ 2. ~~4.~~ 〈현행과 동일〉 ~~5. **규칙 504.**의 4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6**항을 말한다. **【규칙 참조】**~~ 3. ~~6.~~ ~ 4. ~~7.~~ 〈현행과 동일〉 ~~8. **규칙 표 1.3.10**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5)호와 같다. **【규칙 참조】**~~ 5. ~~9.~~ 〈현행과 동일〉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602. 연차검사** 4. 화물창 검사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비고) 1.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지침 참조】** 5. 평형수탱크 검사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새롭게 추가〉**	**〈규칙〉**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602. 연차검사** 4. 화물창 검사 *(2021)* **【지침 참조】** 연차검사 시기의 화물창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비고) 1.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연차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 **【지침 참조】** 5. 평형수탱크 검사 *(2021)* **【지침 참조】** 전회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 광범위한 부식이 있는 경우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두께계측 결과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 비고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602. 연차검사** **3. 규칙 6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4. 〈생략〉 **5. 규칙 602.**의 4항 및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제 6 절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602. 연차검사** ***(2021)*** ~~**3. 규칙 602.**의 5항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형수탱크"라 함은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매년 내부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평형수탱크를 말한다.~~ 3. ~~4.~~ 〈현행과 동일〉 ~~**5. 규칙 602.**의 4항 및 5항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603. 중간검사** **4. 두께계측 범위**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다)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다음에 따를 수 있다. **【지침 참조】** **604. 정기검사** 5.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계측요건은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지침 참조】**	**〈규칙〉** **603. 중간검사** **4. 두께계측 범위** (1) 선령이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은 다음에 따른다. (다) 과도한 부식이 있는 경우 **지침 부록 1-5의 표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두께계측의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 증가된 두께계측은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의심지역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회 검사 시에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두께계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규칙 11편** 또는 **13편**)에 따라 건조된 선박인 경우 식별된 과도한 부식지역은 다음에 따를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604. 정기검사** 5. 두께계측 범위 (2)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증가된 계측요건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르고, 102.의 1항에서 요구하는 검사계획서에 추가로 명시될 수 있는 바에 따른다. ~. *(2021)* ~~**【지침 참조】**~~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5 "선체구조부재의 두께계측 방법"**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603. 중간검사** 5. **규칙 603.**의 4항 (1)호 (다)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604. 정기검사** 3. **규칙 604.의** 5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를 말한다. **【규칙 참조】**	**〈적용지침〉** **603. 중간검사** *(2021)* ~~5. **규칙 603.**의 4항 (1)호 (다)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을 말한다. **【규칙 참조】**~~ **604. 정기검사** *(2021)* ~~3. **규칙 604.의** 5항 (2)호에서 "우리 선급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이라 함은 **지침 부록 1-5**의 **표 18**를 말한다. **【규칙 참조】**~~	- 규칙으로 이동함 - 규칙으로 이동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규칙〉 (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19)* **【지침 참조】** **〈"비고" 새롭게 추가〉** **표 1.3.1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지침 참조】** 1) 광석운반선 이외 (비고) 1. 상기 표에서 (*1)부터 (*5)는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침 참조】** **표 1.3.1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계속) 2) 광석운반선 (비고) 1. 상기 표에서 (*1), (*3), (*4) 및 (*5)는 **지침 부록 1-6**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규칙〉** (6) ~. 정밀검사 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고, 경화보호도장을 하였다면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 두께계측의 범위를 도장하부구조의 실제평균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감소시켜 시행할 수 있다. *(2021)* **【지침 참조】** **비고** :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표 1.3.1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지침 참조】** 1) 광석운반선 이외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부터 (*5)는 **지침 부록 1-6, 1항 (6)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지침 참조】**~~ **표 1.3.13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정기검사 시 정밀검사 최소범위** (계속) 2) 광석운반선 (비고) 1. 상기 표에서 정밀검사 최소범위인 (*1), (*3), (*4) 및 (*5)는 **지침 부록 1-6, 1항 (6)호**에 개략적인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2021)*	- 지침에서 옮겨옴 - 지침에서 옮겨옴 *** 부록 1-6 "정밀검사 대상부재"** - 지침에서 옮겨옴
〈적용지침〉 4. 〈생략〉 5. **규칙 604.**의 5항 (6)호에서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6. 〈생략〉 7. **규칙 표 1.3.13**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6)호와 같다. **【규칙 참조】** 8. 〈생략〉	**〈적용지침〉** 3. ~~4.~~ 〈현행과 동일〉 ~~5. 규칙 604.의 5항 (6)호에서 "도장상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도장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규칙 참조】~~ 4. ~~6.~~ 〈현행과 동일〉 ~~7. 규칙 표 1.3.13의 비고 1에서 정밀검사 부위를 개략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침 부록 1-6의 1항 (6)호와 같다. 【규칙 참조】~~ 5. ~~8.~~ 〈현행과 동일〉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 규칙으로 이동함 - 번호 조정

(6) 2020.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 제 3 절 〈생략〉**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생략〉** **403. 검사사항** *(2018)* 1. 정기검사에서는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선체, 의장 및 (9)호에서 요구하는 관련 배관이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본선이 적절하게 정비와 운항을 하고 정기적 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는 조건으로 지정되는 5년의 새로운 선급기간 동안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함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선체에 대한 검사는 선체구조의 보전성이 유효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9)호 및 (12)호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두께계측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은 존재할 수 있는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 참조】** (1) ~ (18) 〈생략〉 〈이하 생략〉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 제 3 절 〈현행과 동일〉** **제 4 절 정기검사(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401. ~ 402. 〈현행과 동일〉** **403. 검사사항** *(2018)* 1. 정기검사에서는 연차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선체, 의장 및 (9)호에서 요구하는 관련 배관이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본선이 적절하게 정비와 운항을 하고 정기적 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받는 조건으로 지정되는 5년의 새로운 선급기간 동안 의도하는 목적에 적합함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에 대하여 검사, 시험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선체에 대한 검사**는 선체구조의 보전성이 유효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9)호 및~~ (12)호 및 (13)호에서 요구하는 ~~시험 및~~ 두께계측 및 탱크 압력시험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은 존재할 수 있는 과도한 부식, 심각한 변형, 파괴, 손상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기검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021)* **【지침 참조】** (1) ~ (18)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IACS Z 7 (Rev.28 Corr.1 Dec. 2020) 반영 - 선체검사에 관한 요건이므로 (13)호인 “탱크 압력시험”을 참조해야 하지만 배관시스템 검사에 관한 (9)호를 참조하라고 언급되어있어 수정함. : 여기서 **(9)호**는 “수동 빌지 펌프의 효력에 대하여 검사와 관련된 요건임.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사항(국문)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선체/기관규칙개발팀

- 주 요 개 정 내용 -

(1) 2021.01.01.일자 시행 사항(검사신청일 기준)

◉ IMO Res. A. 1140(31)을 반영하여 2장 2절 202. 3. (4)항 수정함.

◉ 내부고객(검사업무팀)의 개정요청 반영
- STCM 부호 적용 선박의 검사요건에 대한 지침의 내용 수정
- 워터제트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 지침의 검사 연장 요건 신설

◉ 내부고객(여수광양지부)의 개정요청 반영
- 워터제트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 지침 중 윤활유 분석 결과의 판단기준 명확화

(2)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내부고객의 개정요청 반영
- 입거주기연장제도(EDD)와 관련된 애매한 요건 명확화 (검사업무팀)
- New IGC 적용선박에 대한 부호 신설 (검사기술CS팀)
- 어선관련 Notation의 특기사항에 Pole and Liner(대낚기) 추가 (검사업무팀)
- 부록 1-16(S14 반영)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중 상충되는 수밀구획과 관련된 Watertight compart와 Watertight subdivision을 병기하여 혼동 예방 (울산지부)

◉ 그 외 규칙 적용시 발견된 불합리한 요건에 등에 대한 개정
- 검사강화제도(ESP) 적용대상 선종(Tank type 포함) 명확화
- 지침의 요건 규칙으로 이동 후 삭제

◉ 통상의 Boiler 검사요건에 대한 대체 검사요건 신설

- 보일러 검사는 IACS UR Z18을 반영하여 개방검사를 하고 있음
- 보일러의 물-증기측 개방검사에 대하여 기관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대체 검사요건 및 부호 신설함.

(3) 2021.07.01.일자 시행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 IACS UR L5(Rev. 4) 및 이전 개정사항 전체 적용지침 부록 1-10에 반영

(4)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 선종부호 중 Oil Tanker의 (Double Hull)(EXP) 비고 개정

(5)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건조계약일 기준)

◉ IACS Z23(Rev. 7 Oct 2020) 개정사항 반영

- 압력등급 다선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MCTSS)의 설치 및 정비 개선을 위한 글로벌 통합표준 필요.
- 선박을 적절하게 정비 및 침수시 선박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MCTSS 설치, 정비 및 수리를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방법 필요
- Z23의 제7.4항에 Rec. 47 대신 인정된 제작표준(RFS)의 사용을 수용하는 절차 추가
- UR Z23 표 1에 "NDT" 대신 "NDE"로 대체
- Rec. 20 삭제 및 새로운 UR W33이 시행됨에 따라, "Rec. 20"을 "W33"으로 대체

(1) 2021.01.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1. 부터 2. 〈생략〉** **3. 규칙 202.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을 검사하여야 한다.** *(2017)* **【규칙 참조】** (1) 부터 (3) 〈생략〉 (4) 소화장치의 작동준비와 유지상태를 점검한다. (5)부터 (16) 〈생략〉 〈이하 생략〉	**제 2 장 선급검사** **제 2 절 연차검사** **202. 선체, 의장 및 소방설비** **1. 부터 2. 〈현행과 동일〉** **3. 규칙 202.의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을 검사하여야 한다.** *(2017)* **【규칙 참조】** (1) 부터 (3) 〈현행과 동일〉 (4) 소화장치의 작동준비와 유지상태를 점검한다. (SOLAS 74/00 Reg. II-2/14) (SOLAS 74/88/91 Reg.II-2/21) *(2021)* (5)부터 (16) 〈현행과 동일〉 〈이하 현행과 동일〉	- IMO Res. A1140(31) Annex 1, (EA) 1.2.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침 2장 202. 3 (4)의 요건인 소화장치의 작동준비 및 유지상태 점검에 해당되는 관련 SOLAS 조항 (SOLAS 74/00 Reg. II-2/14) (SOLAS 74/88/91 Reg.II-2/21)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7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규칙 참조】** 〈생략〉 **3. 규칙 701.**의 **3**항 (1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된 상태감시계획을 적용하는 기름윤활방식의 축을 갖춘 선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하고 추가설비부호로서 STCM부호를 부기한다. *(2017)* **【규칙 참조】** 〈생략〉 (2) **규칙 702.**의 **3**항 (1)호에 따른 축검사 시기에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규칙 702.**의 **1**항 (2)호 (가) 또는 (나)에 따른 검사를 한다. (나) **규칙 702.**의 **1**항 (2)호 (라), (마), (바) 및 (사)에 따른 검사를 한다. 〈이하 생략〉	**제 2 장 선급검사** **제 7절 프로펠러축 및 선미관축 등의 검사** **701. 일반 【규칙 참조】** 〈현행과 동일〉 **3. 규칙 701.**의 **3**항 (19)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된 상태감시계획을 적용하는 기름윤활방식의 축을 갖춘 선박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하고 추가설비부호로서 STCM부호를 부기한다. *(2017)* **【규칙 참조】** 〈현행과 동일〉 (2) **규칙 702.**의 **3**항 (1)호에 따른 축검사 시기에 다음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방법2에 따른 검사를 시행할 시, **규칙 702.**의 **1**항 (2)호 (가) 또는 (나)에 따른 검사 및 (다), (라), (마), (바), (사)에 따른 검사를 한다. *(2021)* (나) 방법3에 따른 검사를 시행할 시, **규칙 702.**의 **1**항 (3)호 (가), (나), (다), (라) 및 (마)에 따른 검사를 한다. *(2021)* 〈이하 현행과 동일〉	- 검사업무팀 요청 (SUR3000-2565-2020) STCM 부호 적용선박에 대한 지침의 내용이 방법2만 가능하도록 표현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 보다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신설>	**부록 1-9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검사기준** **(azimuth or rotatable thruster)** 1. 워터제트 추진장치 및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에 대한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1) 워터제트 추진장치 〈현행과 동일〉 (바) 연장검사 *(2021)* (a) 선사가 요청하는 경우, (e)항목을 검사한 후 검사지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b) 연장검사는 통상 축검사 지정일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축검사 지정일로부터 계산된다. (c) 연장검사를 축검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계산된다. (d) (a)항에 추가하여, 규칙 2장 6절 602.항에 따라 입거검사의 연기가 가능한 경우, 입거검사의 연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고려 할 수 있다. (e) (a) 및 (d)에 따른 검사 연장시 (가)항의 연차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아래의 항목이 만족스럽게 확인되어야 한다. (i) 운전기록의 검토 (ii) 축 및 임펠러에 대하여 보고된 그라인딩 보수 또는 용접보수가 없음을 확인 (iii) 축계장치의 운전상태가 양호함을 기관장이 확인 〈이하 현행과 동일〉	- 검사업무팀 요청 (SUR3000-2185-2020) 워터제트 및 선회식 추진장치에 대한 연장검사 기준이 모호하여 규칙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보다 명확한 검사 요건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 *(2017)* 〈생략〉 (마) 프로펠러 축검사 및 기어장치 검사 *(2019)* (a)~ (c) 〈생략〉 (d) 다음을 포함하는 운전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9)* (i) 윤활유 분석 기록 (ii) 운전상태에 대한 기관장 진술서	(2) 선회식 추진장치(azimuth or rotatable thruster) *(2017)* 〈현행과 동일〉 (마) 프로펠러 축검사 및 기어장치 검사 *(2019)* (a) ~ (c) 〈현행과 동일〉 (d) 다음을 포함하는 운전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9)* (i) 윤활유 분석 기록 (이 때, 윤활유 분석에 대한 기준은 제조사의 지침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따를 수 있다.) *(2021)* (ii) 운전상태에 대한 기관장 진술서 (바) 연장검사 *(2021)* (a) 선사가 요청하는 경우, (e)항목을 검사한 후 검사지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b) 연장검사는 통상 축검사 지정일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 경우 연장기간은 축검사 지정일로부터 계산된다. (c) 연장검사를 축검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한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계산된다. (d) (a)항에 추가하여, 규칙 2장 6절 602.항에 따라 입거검사의 연기가 가능한 경우, 입거검사의 연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고려 할 수 있다. (e) (a) 및 (d)에 따른 검사 연장시 (가)항의 연차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아래의 항목이 만족스럽게 확인되어야 한다. (i) 운전기록의 검토 (윤활유 분석 기록 포함) (ii) 축 및 프로펠러에 대하여 보고된 그라인딩 보수 또는 용접보수가 없음을 확인 (iii) 축계장치의 운전상태가 양호함을 기관장이 확인 〈이하 현행과 동일〉	- 여수광양지부 요청 (YSU4700-428-2020) 윤활유 분석 기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검사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석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함.

(2)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 제 5 절 〈생략〉**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4. 〈생략〉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 1. **〈생략〉** 2. **규칙 605.**의 1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은 입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규칙 605.**의 2항의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대한 필수요건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2) 수중검사 결과 수리를 요하는 손상 또는 결함이 있어 입거검사가 필요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입거주기 연장제도 적용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이 변경되어 기 승인된 입거주기 연장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입거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제 2 장 선급검사** **제 1 절 ~ 제 5 절 〈현행과 동일〉** **제 6 절 입거검사** 601. ~ 604. 〈현행과 동일〉 **605. 입거주기 연장제도** 1. **〈현행과 동일〉** 2. **규칙 605.**의 1항 (6)호에서 "우리 선급은 입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규칙 참조】** (1) **규칙 605.**의 2항의 입거주기 연장제도에 대한 필수요건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2) 수중검사 결과 만재흘수선 아래에 항행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를 요하는 손상 또는 결함이 있어 입거검사가 필요한 경우 *(2021)* (3) 선박소유자가 입거주기 연장제도 적용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이 변경되어 기 승인된 입거주기 연장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 입거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하 현행과 동일〉	- 검사업무팀의 개정 요청 (SUR 3000-814- 2020, 20.4.3)에 의거 - 손상의 정도에 대해 검사원 별 해석이 모호해서 요건의 명확화를 위하여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 8 절 보일러검사 **801. 검사시기** 〈생략〉 **802. 검사사항** 〈생략〉 〈새롭게 신설〉	**제 8 절 보일러검사** **801. 검사시기** 〈현행과 동일〉 **802. 검사사항** 〈현행과 동일〉 **803. 보일러 상태감시가 되는 선박의 검사 *(2021)*** **1. 일반사항** (1) 우리 선급의 승인된 PMS를 운영하는 선박은 2항에서 요구하는 감시장치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정비를 함으로서 추가특기사항으로서 BCM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BCM 부호는 기름/가스 보일러, 배기가스 보일러에 대하여 제조 중 등록검사 시에 또는 운항중인 선박에 부여할 수 있다. (3) BCM 부호를 부여받은 선박은 **규칙** 803.에서 규정한 1회의 보일러검사에 대하여 물-증기측 검사를 기관장이 점검하는 대체검사를 인정할 수 있다. (4)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수 및 응축수의 염도측정기, 유분측정기, 시료채취구의 배치도 및 시료채취의 시기 및 방법 (승인용) (나) 배기가스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 차압 감시 장치의 배치도(승인용) (다) 보일러수, 급수 및 복수의 감시 및 처리 지침서 (승인용) (라) 예방정비제도에서 적용해야할 정비작업 (승인용) (마) 보일러가 가동정지 상태 동안의 보일러 수 감시계획 및 유지계획 (참조용)	- 보일러 수측 상태감시 및 정비를 적용한 보일러 대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2. BCM 부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등록검사 시 보일러의 상태 (가) 보일러는 건전한 구조보존성을 가져야 한다. (나) 보일러에 영구적으로 막아논 튜브(plugged tube)가 없어야 하고, 변형 또는 다른 손상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 보일러는 화염축에 그을음, 수측에 스케일(scale) 및 슬러지가 없어야 한다. (라) PMS정비기록에 보일러의 손상 또는 정비누락이 없을 것 (2) 장치요건 (가) 급수 및 복수장치의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간격으로 화학품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적합한 시료채취구로부터 적절한 온도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수단(예를 들면, 시료 냉각기의 설치)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응축수의 염분을 탐지하고 경보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응축수의 유분을 탐지하고 경보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비요건 (가) 보일러의 급수 및 복수는 24시간 마다 감시하고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화학처리를 하여야 한다. 선박의 제조 중에 사용된 보일러 수는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유지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나) 보일러 및 급수의 감시 기록을 최신화하여 선내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 급수 및 응축수의 분석 기록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보일러수 분석업체에게 보내야 한다. 분석에 대한 제조자의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 검사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다) 기관장은 최소 12개월 마다 보일러의 물-증기측의 내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정비제도에 포함된 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내부검사에 거울, CCTV,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소형 보일러 또는 작은 내부 공간을 가지는 보일러에 대하여 내부공간의 제한된 크기로 인하여 보일러의 내부를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수압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기관장은 연소실 및 화염 측의 검사를 최소 6개월 마다 시행하여야 하고 예방정비제도에 포함된 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마) 제조자가 권고하는 보일러, 버너 및 제어장치의 정비가 예방정비제도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바) 2대 이상의 보일러가 설치되는 경우, 운전하지 않는 보일러에 대하여 보일러수(boiler water) 감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 배기가스 보일러의 배기가스 차압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배기가스 차압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U-튜브 압력계를 사용할 수 있다. (4) 등록검사 (가) 다음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a) **규칙 2장 8절**에 따른 완전한 보일러 검사 (b) 보일러에 막힌 튜브, 변형 및 다른 손상 흔적 확인 (c) 보일러에 그을음, 스케일 및 슬러지가 없음을 확인 (d) 공급수 및 응축수 감시 및 처리가 시행되었는지 확인 (e) 예방정비제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작업을 확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나)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은 (가)에서 요구하는 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동등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a) BCM부호를 부여하기 전에 (1)호에서 요구하는 보일러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i) 보일러의 증기측 및 수측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비다오 증빙자료의 검토와 함께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보일러 검사 (ii) 내부검사, 수리, 정비에 대하여 문서화된 기록 (iii) 보일러수의 관리 기록 및 보일러수 분석업체의 지적사항의 검토 (b) 보호층을 형성하는 화학처리 효과의 이전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c) 보일러가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 BCM 기록철 기록철을 선내 비치하여야 하고 검사사진, 조치요구사항 및 수리 기록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3. 정기적 검사 (1) BCM을 부여받은 선박은 정기검사 시에 수행하는 보일러 검사에 한하여 보일러의 수/증기측 검사를 기관장이 수행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문서는 보일러를 검사하는 입회한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2) 연차검사 (가) 예방정비제도에서 계획된 보일러 정비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BCM 기록철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염분 및 유분 오염을 탐지하는 경보장치의 만족스러운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BCM에 따른 대체 보일러 검사 (가) 보일러의 물-증기 측 내부검사는 기관장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a) (2)호의 연차검사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검사원의 입회 전에 보일러의 물-증기측 내부검사를 기관장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검사는 선박의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c) 물-증기측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가 검사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선명한 사진 또는 비디오가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d) 물-증기측의 검사가 만족스럽고, 손상, 스케일 또는 슬러지가 발견되지 않았음이 명시된 기관장이 서명한 선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 기관장의 자격이 만족스러움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물-증기측 검사를 제외하고 **규칙 2장 8절**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검사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대체 보일러검사 이외의 보일러 검사 **규칙 2장 8절**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사 유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2020)*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ESP'(2-1)	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	(1) : 선종 중 1, 3, 4, 8, 9 및 18란에서의 FA, FB, FAC, FAO 및 FBC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FA : Flash point above 60°C FB : Flash point of 60°C and below FAC : FA with controlled tank vents FAO : FA with open tank vents FBC : FB with controlled tank vents〈생략〉 (2-0) : 2.0의 기재요령 참조 (2-1) : 일반적으로 일체형탱크를 가지고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중간갑판과 같은 특이한 구조적배치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일 및 이중선체구조의 탱커에 부기한다.(**그림 1** 참조) 주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19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Oil Tanker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20규칙 및/또는 제21규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제 및/또는 국내 법규에 따라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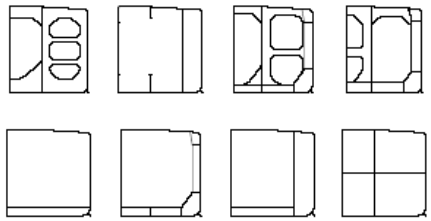 **그림 1 Oil Tanker 'ESP'의 중앙횡단면 예** (2-2) ~ (2-3) 〈생략〉 (2-4) : 모든 화물탱크가 독립형탱크인 경우에 부기하며 **규칙 1편**의 적용 시 유조선 및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부가적 요건(ESP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2-5) : **규칙 12편** 또는 **규칙 13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2019)*
1. Oil Tanker(2-0) (Double Hull)(2-2) (Double Hull)(EXP) (2-3) (FAC)(1) (FAO)(1) (FBC)(1) (CSR)(2-5)	Asphalt(2-4)	

- 규칙 2장 101. 21. 검사강화제도 개정사항 반영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및 기재요령

- 규칙 2장 101. 21. 검사강화제도 개정사항 반영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1. Oil Tanker(2-0) 'ESP'(2-1) *(2021)* (Double Hull)(2-2) (Double Hull)(EXP) (2-3) (FAC)(1) (FAO)(1) (FBC)(1) (CSR)(2-4) ~~(2-5)~~	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 ~~Asphalt(2-4)~~	(1) : 선종 중 1, 3, 4, 8, 9 및 18란에서의 FA, FB, FAC, FAO 및 FBC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FA : Flash point above 60°C FB : Flash point of 60°C and below FAC : FA with controlled tank vents FAO : FA with open tank vents FBC : FB with controlled tank vents〈생략〉 (2-0) : 2.0의 기재요령 참조 (2-1) : 일반적으로 일체형탱크를 가지고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중간갑판과 같은 특이한 구조적배치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단일 및 이중선체구조의 탱커에 부기한다.(**그림 1** 참조) *(2021)* 주의: 1)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19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Oil Tanker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 제20규칙 및/또는 제21규칙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을 요구하는 국제 및/또는 국내 법규에 따라야 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운반선과 같이 화물탱크가 일체형탱크 ~~선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형 탱크~~에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은 검사강화제도(ESP)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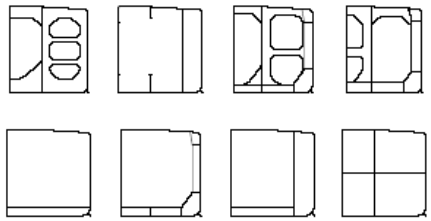 **그림 1 Oil Tanker 'ESP'의 중앙횡단면 예** (2-2) ~ (2-3) 〈현행과 동일〉 ~~(2-4) : 모든 화물탱크가 독립형탱크인 경우에 부기하며 **규칙 1편**의 적용 시 유조선 및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부가적 요건(ESP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2-5)~~ : **규칙 12편** 또는 **규칙 13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현 행

선종	특기사항					비고
	A	B	(C)	D or P	IMO Code(5)	
2-1. Liquefied Gas Carrier *(2017)*	1G 2G 2PG 3G	2I 3M 3S 1A 1B 1C	(R) (P) (RP)	Design Pressure, Minimum Temperature and Specific Gravity(SG)	(IGC) (GC) (GCX)	(4) : IGC 또는 GC Code에 적합하지 않은 현존선으로서 Propane 및 Butane만을 운송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다만, Propane 및 Butane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득한 후 LPG 대신에 다음과 같이 특정화물명을 부기할 수 있다. (예) : Ammonia, Butadiene, Propylene, VCM, Ethylene Oxide, Ethylene 등 (5) : 다음에 따른다. 〈새롭게 추가〉 1) IGC : 1986.7.1 이후 건조된 선박으로서 **규칙 7편 5장**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IMO Res.A328(IX)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3) GCX : IMO Res.A329(IX)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4) 상기 이외의 선박은 별도의 부호를 부기하지 않는다.
				Name of Liquefied Gas when exclusively carried		
	LPG(4)					

개 정 안

선종	특기사항					비고
	A	B	(C)	D or P	IMO Code(5)	
2-1. Liquefied Gas Carrier *(2017)*	1G 2G 2PG 3G	2I 3M 3S 1A 1B 1C	(R) (P) (RP)	Design Pressure, Minimum Temperature and Specific Gravity(SG)	(NIGC) (IGC) (GC) (GCX)	(4) : IGC 또는 GC Code에 적합하지 않은 현존선으로서 Propane 및 Butane만을 운송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다만, Propane 및 Butane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득한 후 LPG 대신에 다음과 같이 특정화물명을 부기할 수 있다. (예) : Ammonia, Butadiene, Propylene, VCM, Ethylene Oxide, Ethylene 등 (5) : 다음에 따른다. *(2021)* 1) NIGC : 2016.7.1. 이후 개정된 규칙 7편 5장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2) ~~1)~~ IGC : 1986.7.1 이후 건조된 선박으로서 **규칙 7편 5장**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3) ~~2)~~ GC : IMO Res.A328(IX)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4) ~~3)~~ GCX : IMO Res.A329(IX)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5) ~~4)~~ 상기 이외의 선박은 별도의 부호를 부기하지 않는다.
				Name of Liquefied Gas when exclusively carried		
	LPG(4)					

개 정 사 유

- 검사기술CS팀 (CST3200-19-2020, 2020. 2.11) 요청

: 2016.7.1.일 이후 건조 계약된 액화가스 산적 운반선은 전면 개정된 규칙 7편 5장 및 New IGC Code를 적용 받으므로, 이전 규칙 및 Old IGC Code 적용 선박과는 구별되는 부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 11. 〈생략〉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12. Fishing Vessel(21) / Long Liner(연승) Stern Trawler(선미트롤) Side Trawler(선측트롤) Whaler(포경선) Purse Seiner(선망) Gill Net(유자망) Angling(채낚기) Stick-held Dip Net(봉수망) Bottom Long Liner(저연승) Trap(통발) Stow Net(안강망) Lift Net(부망) Dredge Net(형망) Seiner(인망) Stab Net Lighting(등선) 〈새롭게 추가〉	3. ~ 11. 〈현행과 동일〉 선종 / 특기사항 / 비고 12. Fishing Vessel(21) / Long Liner(연승) Stern Trawler(선미트롤) Side Trawler(선측트롤) Whaler(포경선) Purse Seiner(선망) Gill Net(유자망) Angling(채낚기) Stick-held Dip Net(봉수망) Bottom Long Liner(저연승) Trap(통발) Stow Net(안강망) Lift Net(부망) Dredge Net(형망) Seiner(인망) Stab Net Lighting(등선) Pole and Line(대낚기)	- 검사업무팀 개정요청에 의거 by E-mail(2019 Aug 20) : 제조후 등록 JG어선 제조후 등록시 식별된 특기사항 Pole and Line (대낚기) : 어군이 얕은 곳에 산발적으로 있을 때 쓰는 낙시어구로 오징어 대낚시나 가다랑어 책낚기와 같이 낚시대, 낚시줄 , 낚시의 세부분으로 구성됨.

현 행	개 정 사 유
13. ~ 14. 〈생략〉 〈이하 생략〉	개정 요청 : 환경배관팀 e-mail on 12 Feb. 2020 - 적용지침 1편 부록 1-1의 에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및 FFS3는 OSV를 제외하고 Tug Boat에 만 부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부기부호를 Work Vessel 및 필요한 경우 다른 선종(Special Purpoese Ship 등)에도 부기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A* (용도)	A* : 특기사항, A(용도),와 관련하여,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19)*
	- Salvage Supply Anchor Fire Fighting(GA 또는 GC)(24) Oil Recovery(GA, GB 또는 GC)(25)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Fire Fighting" 특기사항을 부여하며 GA 또는 GC는 다음에 따른다.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15.2 Pusher *(2018)*	〈현행과 동일〉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16. Work Vessel	〈현행과 동일〉 Oil Recovery(GA, GB 또는 GC)(25)(26) 〈현행과 동일〉	- : Work 전용인 경우에는 기재불요 (25) : 다음에 따른다. 1)부터 3) 〈현행과 동일〉 〈새롭게 추가〉
17. Special Purpose Ship	〈현행과 동일〉 Fire-Fighting(소방선)(GA 또는 GC)(24) (26) 〈현행과 동일〉	〈새롭게 추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3. ~ 14. 〈현행과 동일〉			개정 요청 : 환경배관팀 e-mail on 12 Feb. 2020 - 적용지침 1편 부록 1-1의 에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및 FFS3는 OSV를 제외하고 Tug Boat에 만 부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부기부호를 Work Vessel 및 필요한 경우 다른 선종(Special Purpoese Ship 등)에도 부기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선종	특기사항	비고	
15-1. Tug Boat	A* (용도)	A* : 특기사항, A(용도),와 관련하여,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제 8장** "소방선"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21)*	
	- Salvage Supply Anchor Fire Fighting(GA 또는 GC)(24) Oil Recovery(GA, GB 또는 GC)(25)	- : Tug 또는 Pusher 전용의 경우 별도 기재 불요 (2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Fire Fighting" 특기사항을 부여하며 GA 또는 GC는 다음에 따른다. 1) GA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요구되는 방폭요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기한다. 2) GC : 타선소화설비와 관련하여 노출갑판 상에 방폭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 부기한다.	
15.2 Pusher *(2018)*	〈현행과 동일〉	Type A : permanent connection 형식 Type B : removable connection 형식	
16. Work Vessel	A* (용도)	A* :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제 8장** "소방선"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21)*	
	〈현행과 동일〉	- : Work 전용인 경우에는 기재불요 〈현행과 동일〉	
17. Special Purpose Ship	A* (용도)	A* :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제 8장** "소방선"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Offshore Support Vessel(OSV)의 특기사항 부호인 FFS1, FFS2, FFS3 또는 FF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OSV의 특기사항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21)*	
	〈현행과 동일〉	- : Special Purpose Ship 전용인 경우에는 기재불요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	**부록 1-16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 *(2018)***	- 울산지부 개정요청에 의거 (ULS4700-371-2020, 9th June 2020)
제조중 등록검사에 있어서 구조시험, 누설시험 및 사수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제조중 등록검사에 있어서 구조시험, 누설시험 및 사수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는 아래와 같이 A편 및 B편으로 구분한다. (가) ~ (나) 〈생략〉	(1) 탱크 및 밀폐경계에 대한 시험절차는 아래와 같이 A편 및 B편으로 구분한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에 대한 수밀구획의 시험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편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에 대한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s)의 시험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편에 따른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3)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및 아래의 조건에 포함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은 B편에 따라 수밀구획의 시험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가) ~ (나) 〈생략〉	(3)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및 아래의 조건에 포함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은 B편에 따라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s)의 시험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A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	**A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이 시험절차의 목적은 탱크와 수밀경계의 수밀성 및 선박의 수밀구획(수밀구획은 SOLAS 제2-1장의 구획요건에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주 횡격벽과 종격벽을 의미한다.)을 구성하는 탱크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 절차는 구조 및 갑판의장의 풍우밀성을 검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신조선 및 주요 개조 또는 주요 수리(구조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에 해당하는 선박의 모든 탱크와 수밀경계의 밀폐성은 선박의 인도전에 이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1) 이 시험절차의 목적은 탱크와 수밀경계의 수밀성 및 선박의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s, 여기서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은 SOLAS 제2-1장의 구획요건에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주 횡격벽과 종격벽을 의미한다.)을 구성하는 탱크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 절차는 구조 및 갑판의장의 풍우밀성을 검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 신조선 및 주요 개조 또는 주요 수리(구조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에 해당하는 선박의 모든 탱크와 수밀경계의 밀폐성은 선박의 인도전에 이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 영어로는 다른 의미인 "**watertight compartments**"와 "**watertight subdivisions**"이 한글로는 "**수밀구획**"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에 대한 수밀구획의 시험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편**에 따른다.	(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적용대상선박(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에 대한 국제선급연합회(IACS) 공통구조규칙(규칙 13편) 포함)에 대한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s)의 시험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편**에 따른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시험절차 (1) 〈생략〉 (2) 구조시험 절차 (가) 〈생략〉 (나) 신조선 또는 주요 구조개조에 대한 시험일정 (a) 액체를 넣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수밀 및 구조강도의 확인을 위하여 **표 3.1.1 및 표 3.1.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b) ~ (c) 〈생략〉 (d) 수밀구획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탱크의 경우, 면제된 구역의 수밀경계면을 기밀시험과 검사로 확인이 되었다면 구조시험은 면제될 수도 있다. 〈생략〉 **B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및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면제 또는 동등물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 **1. 일반사항** (1) 이 시험절차의 목적은 탱크와 수밀경계의 수밀성 및 선박의 수밀구획(수밀구획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의 구획요건에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주 횡구획과 종구획을 의미한다)을 구성하는 탱크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 절차는 구조 및 갑판의장의 풍우밀성을 검증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신조선 및 주요 개조 또는 주요 수리(구조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에 해당하는 선박의 모든 탱크와 수밀경계의 밀폐성은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이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4. 시험절차** (1) 〈현행과 동일〉 (2) 구조시험 절차 (가) 〈현행과 동일〉 (나) 신조선 또는 주요 구조개조에 대한 시험일정 (a) 액체를 넣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은 수밀 및 구조강도의 확인을 위하여 **표 3.1.1 및 표 3.1.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b) ~ (c) 〈현행과 동일〉 (d)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탱크의 경우, 면제된 구역의 수밀경계면을 기밀시험과 검사로 확인이 되었다면 구조시험은 면제될 수도 있다. 〈현행과 동일〉 **B편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비 적용대상선박 및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면제 또는 동등물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 **1. 일반사항** (1) 이 시험절차의 목적은 탱크와 수밀경계의 수밀성 및 선박의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s, 여기서 수밀구획(watertight subdivision)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의 구획요건에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주 횡구획과 종구획을 의미한다)을 구성하는 탱크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시험 절차는 구조 및 갑판의장의 풍우밀성을 검증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신조선 및 주요 개조 또는 주요 수리(구조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수리)에 해당하는 선박의 모든 탱크와 수밀경계의 밀폐성은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이 시험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울산지부 개정요청에 의거 (ULS4700-371-2020, 9th June 2020) : 영어로는 다른 의미인 “watertight compartments”와 “watertight subdivisions”이 한글로는 “수밀구획”으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3) 2021.07.01일자 시행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0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1. 적용** (1) 이 규정은 **규칙 1장 307.**의 요건에 따라 선박의 길이가 24 m 이상인 선박으로서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하지침기기(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신선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현존선에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적용상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중등록검사 신청된 선박은 신선으로 간주하고 그 이전에 제조중등록검사 신청된 선박은 현존선으로 간주한다. **2. 승인절차** *(2017)* (1) 복원성 적하지침기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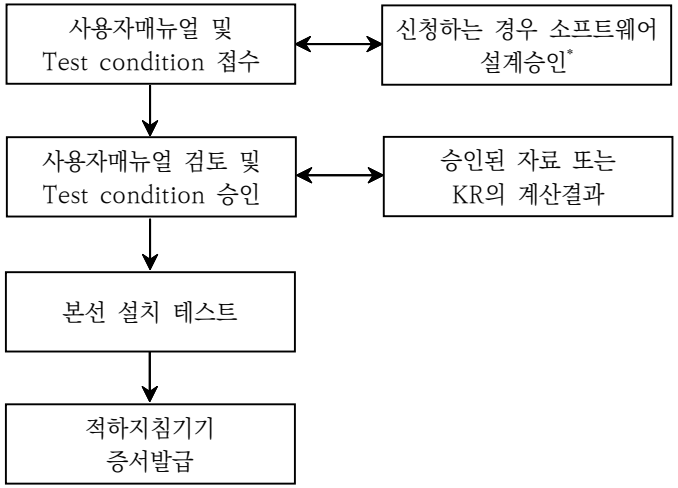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의 승인은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그림 1 특정선박에 대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의 승인에 관한 절차**	**부록 1-10 복원성 적하지침기기** **1. 적용** (1) 이 규정은 **규칙 1장 307.**의 요건에 따라 선박의 길이가 24 m 이상인 선박으로서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하지침기기(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신선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현존선에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적용상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중등록검사 신청된 선박은 신선으로 간주하고 그 이전에 제조중등록검사 신청된 선박은 현존선으로 간주한다. *(2021)* **2. 승인절차** *(2017) <현행과 동일>*	- 기본기술팀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가) 사용자 매뉴얼 및 test condition 3부를 우리 선급의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성자료가 임시자료로 승인된 경우 test condition은 이에 따라 임시자료로 승인될 수 있으며 본선 설치검사에 따른 증서도 PROVISIONAL로 발급될 수 있다. (나) 사용자 매뉴얼 검토 및 test condition의 승인 시 검토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예시된 test conditions에 대한 기기의 복원성 출력결과는 정확함. - 사용자 매뉴얼의 기술적 내용과 형식은 적합함. (2) 복원성 기기가 육상 사무실에서 사용될 목적인 경우(이 경우 여러 척의 다른 선박의 복원성 계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임)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 본 부록의 절차가 만족스럽게 완결되어야 한다. - 기기가 사용되는 각 선박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의 검토 및 test condition들이 승인되어야 한다. - 하드웨어의 작동성능은 테스트되어야 하나 환경테스트는 통상 요구되지 않는다. - 설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하면 증서를 발행한다. (3) 우리 선급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적하지침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 매뉴얼의 제출은 면제된다.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3. 특정 선박에 대한 소프트웨어 (1) 일반 (가) 설계 승인된 소프트웨어를 특정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사용한 hull form과 구획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test loading condition의 상세 및 그 계산 결과가 제출되어야 한다. (나) 선박의 적재흘수 범위를 대표하는 적어도 4개의 test loading condition이 있어야 한다. 즉, 최대 적재흘수, 경하흘수 및 2개의 중간흘수이다.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적재조건들은 승인 요청되는 복원성 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test loading condition에서 전체 Dead weight 항목이 나타나야 하며 각 Dead weight 항목별 관련 자유표면 효과에 대한 자료도 포함해야 한다. (다) (2)부터 (3)항에서 제출토록 요구되는 도면 및 자료는 설계자등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비손상복원성 (가) 우리 선급에 제출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 모든 부가물을 포함한 hull form 정의에 대한 상세(예: 선도 및(또는) off-sets) - Cross curve data를 포함한 Hydrostatic particulars - 모든 Compartment 정의 상세(용적, 용적중심 및 자유표면 효과를 표시하고 있는 요목표 포함) - 비손상시 Downflooding point 위치들에 대한 상세 - 관련 규칙 및 요건의 상세 및 그 만족 여부를 보여주는 계산결과 - 출력 결과의 hard copy (나) 모든 test loading condition들에 대한 전체 계산결과의 hard copy는 우리 선급의 계산결과(또는 승인된 복원성 자료)와 비교되며, 이 출력은 배수량, 흘수, 트림, *VCG*, *LCG*, *GM*, 자유표면 효과 수정 및 down flooding 각도를 포함해야 한다. 잉여 *GZ* table(또는 커브)이 각 조건에 대하여 생성되어야 하며 비손상 복원성 규칙을 만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3. 선박의 복원성 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2021)*** **(1) 적용** (가) 우리선급에 등록 예정인 또는 등록된 선박 및 해양구조물(예, MODU)에 설치되는 실제 적재조건의 복원성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한다. (나) 복원성 계산을 위해 본선에 설치되는 컴퓨터가 형식승인된 기기인 경우에는 1대, 형식승인 기기가 아닌 경우에는 2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복원성 소프트웨어는 선박에 적용되는 선급기술규칙, 협약의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을 다루어야 한다. 이 요건은 복원성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는 본선의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라) 능동 및 수동 시스템은 (3)호에 정의되어 있다. 이 요건은 수동시스템 및 능동시스템의 오프라인 작동모드에만 적용된다. **(2) 일반** (가) 복원성 계산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우리 선급이 승인한 복원성자료에 따르며, 적용 가능한 복원성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복원성 소프트웨어는 승인된 복원성자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복원성 계산을 용이하게 하고 승인된 복원성자료를 보완한다. (다) 입력/출력 정보는 사용자가 혼동하거나 오해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도록 승인된 복원성자료와 쉽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선에 설치된 복원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 화면에 나타나고 인쇄되는 복원성정보의 언어와 사용자 매뉴얼에 쓰여진 언어는 승인된 복원성자료에 사용된 언어와 동일해야 한다. 단, 적하지침기기상의 언어가 영어일 경우에는 사용된 언어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선급은 적절한 언어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 IACS UR L5 전체 반영 - 기본기술팀 의견 반영 - 적용지침 3편 3장 10 4. “종강도 적하지침기기”의 5.항 (2) 요건 반영 - 내항선의 자료는 국문이고 적하지침기기의 화면에는 영문이므로 관련 내용 추가함(기본기술팀 의견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다) 선체형상 및 각 test loading condition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Hydrostatic 및 비손상복원성 특성들을 우리 선급의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결과들(또는 승인된 복원성 자료)과 대비하여 검토되며, 검토될 특성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전체 운항 흘수 범위에 대한 Hydrostatic 특성. - 전체 운항 배수량 범위에 대한 Stability cross curve. - 완전하게 기술된 test loading condition들에 대한 특성. - 비손상복원성 요건의 만족여부. - 해당되는 경우 전 운항 흘수범위에 대한 관련 제한 *KG/GM/DWT* 값들. (3) 곡류적재 복원성 (가) (2)호 (가)에 열거된 자료에 추가하여, 다음의 자료가 곡류적재 복원성 계산의 평가를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화물창 도면으로써 해치단 비임(feeding hole이 취부된 경우 이를 포함) 상세를 포함한 해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 - 해치커버 상세. - 해당되는 경우 종격벽 상세 - 만족해야 되는 관련 규정들 및 요건 상세,(예를 들어 비손상복원성 요건에 추가하여 국제 Grain 코드.) - 출력 결과의 hard copy (나) 우리 선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결과(또는 승인된 곡류적재 복원성 자료)와 상세한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test loading condition들에 대한 전체 결과의 hard copy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 출력은 배수량, 흘수, 트림, *VCG*, *LCG*, *GM*, 자유표면 효과 수정, down flooding 각도, grain heeling moment 및 최대 허용 grain heeling moment를 포함해야 한다. 커브 또는 도표 형식으로 된 잉여 *GZ* 분포가 각 test loading condition마다 생성되어 비손상 및 곡류적재 복원성 요건을 만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 선박에 따라 복원성계산을 위하여 본선의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며 계산 결과는 승인된 선박에만 적용 할 수 있다. (사) 선박의 주요 정보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내부 배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승인된 복원성 계산 소프트웨어는 유효하지 않으며 수정 후 우리 선급에 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계산 체계** (가) 수동시스템에는 수동으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하다. (나) 능동시스템은 센서가 탱크의 내용물을 읽고 입력하는 것으로써 수동입력을 대체한다. (다) 세 번째 시스템인 통합시스템은 센서 제공 입력을 기반으로 작업을 제어하거나 시작하며 이 요건에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4) 복원성 소프트웨어의 형식** 선박의 복원성 요건에 따라 복원성 소프트웨어로 수행되는 4가지 형식의 계산이 인정된다. (가) 형식 1(Type 1) 비손상 복원성만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손상복원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선박) (나) 형식 2(Type 2) 비손상 복원성을 계산하고 한계곡선 (예 : SOLAS Part B-1 손상복원성 계산에 적용되는 선박 등)을 기준으로 손상복원성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한계곡선(a limit curve)을 기준으로 모든 복원성요건 (손상 및 비손상 복원성)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각 테스트 적재조건에 대한 결과는 우리 선급 프로그램에 의해 도출된 결과(또는 승인된 곡류적재 복원성 자료)에 대비하여 검토되며, 평가될 자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다.~~ ~~- 만재 또는 부분 적재된 각 compartment에 대한 grain heeling moment 곡선도 또는 도표(임시 퍼팅류의 효과 포함)~~ ~~- 최대 허용 heeling moment 도표 또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만족함을 보여주는 다른 정보~~	(다) 형식 3(Type 3) 비손상 복원성을 계산하고 각 적재조건(일부 유조선 등)에 대한 관련협약 또는 Code에 따른 사전에 정의된 손상사례를 직접 적용하여 손상복원성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라) 형식 4(Type 4) 안전귀항(SRtP)을 위한 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한 손상을 직접 적용하여 실제 적재조건 및 실제 침수사례와 관련된 손상복원성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형식 3과 형식 4의 복원성 소프트웨어의 손상복원성은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즉 완전한 3차원 기하모델로부터 직접계산 되어야 한다. **(5) 기능적 요건** (가) 모든 형식의 복원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 요건 (a) 계산 프로그램은 선박이 승인된 적재조건 내에서 적재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선장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각의 적재상태와 관련된 매개변수를 표시해야 한다. 주어진 적재상태에 대해 다음의 파라미터가 표시되어야 한다. - 재화중량 데이터 - 경하화중량 데이터 - 트림 - draft mark와 수선에서의 흘수 - 적재상태 배수량, 수직방향 무게중심(VCG), 종방향 무게중심(LCG) 및 해당되는 경우, 횡방향 무게중심 (TCG) - 해수유입(Downflooding) 각도 및 해당되는 해수유입 개구부 (모든 복원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한계곡선을 사용하는 형식 2 소프트웨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계곡선에 추가하여 비손상 복원성 기준이 제시 되면 해수유입 각도 및 해당되는 해수유입 개구부가 표시되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 복원성 기준 만족 : 모든 계산된 복원성 기준, 한계 값, 결과값 및 결론(기준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의 목록 (모든 복원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한계곡선을 사용하는 형식 2 소프트웨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계곡선에 추가하여 비손상복원성 기준이 제시되면 한계 값, 획득된 값 및 결론이 표시되어야한다) (b) 적재조건이 기준에 만족되지 않으면 화면과 인쇄본에 명확한 경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적재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트림, 흘수, 액체 밀도, 탱크 레벨, 초기 횡경사 - 형식 2에 대해 상기 (1)과 관련된 제한 KG/GM 곡선 사용 - 목재만재흘수선이 지정된 경우 목재의 적재높이 제한 (c) 형식 3 소프트웨어는 주어진 적재조건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른 자동점검을 위해 선박의 양쪽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손상사례가 포함되어야 한다. (d) 저장된 계산과 관련된 날짜 및 시간은 화면 디스플레이 및 하드카피 출력물의 일부이다. (e) 각각의 하드카피 출력물에는 소프트웨어의 버전번호 및 식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f) 측정단위는 loading 계산 시 명확하게 식별되고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g) 형식 3 및 형식 4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스템은 부속물을 포함한 완전한 선체, 모든 구획, 탱크 및 손상복원성 계산에 고려되는 선루부분에 대해 모델링 되어야 하고 적용될 경우 wind profile, down-flooding 및 up-flooding 개구부, cross flooding 배치, 내부 구획 연결과 탈출경로 등이 모델링 되어야 한다. (h) 형식1 및 형식 2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전체 3차원 모델이 복원성 계산에 사용되는 경우, 컴퓨터 모델의 요건은 상기 (g)의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와 복원성 소프트웨어의 형식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나) 형식 4 복원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요건 (a) 일반(형식 1, 2 및 3) 소프트웨어와 안전귀항(SRtP, 형식 4) 소프트웨어는"완전히 분리"될 필요는 없다. 일반 소프트웨어와 안전귀항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 일반 소프트웨어와 안전귀항 소프트웨어 간 변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실제 비손상 적재조건은 두 기능 (정상 작동 및 안전귀항)에 대해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 안전귀항 모듈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활성화해야 한다. 안전귀항(형식 4)의 소프트웨어는 복원성만 승인한다. (b) 안전귀항이 적용되는 여객선에서 본선에 설치된 복원성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육상-기반지원 소프트웨어는 동일할 필요는 없다. (c) 승인된 복원성자료에 보다 정확한 침수율이 반영되지 않는 한, 각 내부 구역에는 아래와 같은 침수율이 적용되어야한다.	

구역	침수율(Permeability)			
	Default(고정)	Full	Partially filled	Empty
컨테이너 구역	0.95	0.70	0.80	0.95
건화물 구역	0.95	0.70	0.80	0.95
Ro-Ro 구역	0.95	0.90	0.90	0.95
액체화물 구역	0.95	0.70	0.80	0.95
소모성 액체용 구역	0.95	0.95	0.95	0.95
저장용품 구역	0.95	0.60	(0.60)	0.95
기관이 있는 구역	0.85			
보이드 스페이스	0.95			
거주설비가 있는 구역	0.95			

(d) 이 시스템은 바람, 구명정 진수, 화물 이동 및 승객 재배치 등에 따른 모멘트(moment)를 고려할 수 있어야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e)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SOLAS II-1/7-2.4.1.2의 방법을 사용하여 바람의 영향을 고정값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이 확연히 다를 경우 풍속/풍압을 수동으로 입력 할 수 있다. (P = 120 N/m2는 Beaufort 6과 같으며 약 13.8m/s 또는 27 노트 임). (f) 이 시스템은 개방된 주 수밀문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 : 검증을 위해 제공된 각각의 손상 사례와 관련하여, 손상된 구획 내에 위치한 수밀문을 고려한 추가의 손상복원성 계산이 수행되고 제시 되어야 한다) (g) 이 시스템은 최근의 승인된 경화중량 및 무게중심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h) 소프트웨어의 출력물은 실제손상에 대한 선박의 복원성, 탈출수단에 대한 침수의 영향 및 선박의 복원성을 관리 및/또는 통제하는데 필요한 장치의 제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귀항 소프트웨어에 실제 적재조건이 입력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물(비손상 복원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재화중량 데이터 - 경하중량 데이터 - 트림 - 횡 경사 - draft mark와 수선에서의 흘수 - 적재조건 배수량, VCG, LCG 및 해당되는 경우, TCG - Downflooding 각도 및 대응하는 downflooding 개구부 - 자유 표면 - 메타센터높이(GM) 값 - 다음 간격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의 횡경사 (60 ° 이상)와 관련된 복원정(GZ) 값 : 0, 5, 10, 15, 20, 25, 30, 40, 50, 60 deg. - 적절한 비손상 복원성 기준 (즉, 2008 IS 코드) 만족여부 : 모든 계산된 비손상 복원성 기준, 한계 값, 획득된 값 및 평가 (기준이 충족되는지 또는 충족되지 않은지)관련 목록 - SOLAS II-2/Reg. 5-1에 따른 GM/KG 한계곡선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사고로 인한 실제 하중조건에서의 손상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출력물(손상 복원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트림 - 횡 경사 - draft mark와 수선에서의 흘수 - 점진적인 침수 각도 및 대응하는 점진적인 침수 개구부 - 메타센터높이(GM) 값 - 다음 간격으로 표시 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의 횡경사 (60 ° 이상)와 관련된 복원정(GZ) 값 : 0, 5, 10, 15, 20, 25, 30, 40, 50, 60 deg. - 복원성 기준 준수 : 모든 계산된 복원성 기준, 한계 값, 획득된 값 및 결론 (기준이 충족되는지 또는 충족되지 않은지) 관련 목록 - 형식 4 소프트웨어(안전귀항)의 생존성 기준은 기국이 인정한는 바에 따른다. - 손상시 수선에서 침수지점(비보호 또는 풍우밀)까지의 각 거리 - 침수율이 고려된 모든 침수된 구획의 목록 - 각 침수된 구획의 수량(amount of water) - 탈출경로 몰입 각도 - 침수된 수선면(water-plane) 및 손상된 구획을 나타내는 선박의 측면도, 평면도, 단면도. (i) 로로 여객선의 경우 갑판상에 축적된 물(WOD)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내에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예 : 승인된 복원성자료에서 취한 사전에 정의된 유의파고에 추가하여, - 승조원이 시스템 내에 본선 항해구역의 유의파고를 수동으로 입력 할 수 있어야 하며, - 갑판상에 축적된 물의 영향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개의 추가 유효파고에 대한 계산서 제출) * * (i)항은 스톡홀름 협정에 따라 Ro-Ro 여객선에 적용된다. (IMO Circular Letter No. 1891)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6) 허용 범위 가. 프로그램의 형식과 범위에 따라 허용 범위는 (6) 나.호 또는 (6) 다.호에 따라 결정된다. 허용범위로 부터의 편차는 충분한 설명이 있고 선박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a) 사전 프로그래밍 된 입력 데이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Hydrostatic 데이터 : 배수량, LCB, LCF, VCB, KMt 및 흘수에 따른 MCT. - 복원성 데이터 : 적절한 횡경사/트림 각도에서의 배수량별 KN 또는 MS 값. 복원성 제한 - 구획 데이터 : Volume, LCG, VCG, TCG 및 FSM/구획 높이별에 따른 곡물적재 횡경사 모멘트 (b) 출력 데이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Hydrostatic 데이터 : 흘수에 해당하는 배수량, LCB, LCF, VCB, KMt 및 MCT, 실제 흘수 및 트림 - 복원성 데이터 : 자유 표면 보정(FSC), 복원정 값, KG, GM, KG/GM 한계, 허용 가능한 곡물적재 횡경사 모멘트, 관련 복원성 기준 (예 : 복원정(GZ) 곡선하 면적, 풍압 기준) - 구획 데이터 : 구획의 레벨에 따른 계산된 볼륨, LCG, VCG, TCG 및 FSM/곡물적재 횡경사 모멘트 계산 프로그램 결과의 계산 정확도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또는 동일한 입력으로 승인된 복원성자료를 사용한 결과의 허용범위((6) 나.호와 (6) 다.호에 명시된) 내에 있어야 한다. 나. 복원성 계산에 대한 근간으로 승인된 복원성자료로부터 사전 프로그래밍 된 데이터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입력데이터의 출력물에 대해서는 허용범위가 0이다. 출력 데이터의 허용범위는 0에 가까워야 하지만 계산 반올림 또는 요약된 입력데이터와 관련된 작은 차이는 허용된다. 승인된 복원성자료에 있는 것과 다른 트림에 대한 hydrostatic 및 복원성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추가의 차이는 우리 선급의 검토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다. 복원성 계산의 기초로 선형모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출력물은 승인된 복원성자료 또는 승인된 모델을 사용 하여 얻은 데이터와 허용범위의 오차를 가져야한다. 허용 범위는 표 1에 따른다.	

표 1

선형 부가물	
배수량 (Displacement)	+/- 2%
종부심(Longitudinal center of buoyancy), from AP	+/- 1% / 50 cm
수직부심(Vertical center of buoyancy)	+/- 1% / 5 cm
횡부심(Transverse center of buoyancy)	+/- 0.5% of B / 5 cm
Longitudinal center of flotation, from AP	+/- 1% / 50 cm
Moment to trim 1 cm	+/- 2%
횡메타센터 높이 (Transverse metacentric height)	+/- 1% / 5 cm
종메타센터 높이 (Longitudinal metacentric height)	+/- 1% / 50 cm
복원성 교차곡선도 (Cross curves of stability)	+/- 5 cm
독립된 구획	
용적(Volume) or 재화중량(deadweight)	+/- 2%
종중심(LCG), from AP	+/- 1% / 50 cm
수직중심(VCG)	+/- 1% / 5 cm
횡중심(TCG)	+/- 0.5% of B / 5 cm
자유표면 모멘트	+/- 2%
Shifting moment	+/- 5%
레벨(Level of contents)	+/- 2%
트림 및 복원성	
흘수(선수, 선미, 평균)	+/- 1% / 5 cm
GMt (both solid and corrected for free surfaces)	+/- 1% / 5 cm
복원정(GZ) 값	+/- 5% / 5 cm
Downflooding 각도	+/- 2^0
평형 각도(Equilibrium angles)	+/- 1^0
WL에서 비보호 및 풍우밀 개구부 또는 기타 해당지점까지의 거리 (해당되는 경우)	+/- 5% / 5 cm
복원정 곡선하의 면적	+/- 5% / 0.0012mrad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비고: 1. 편차(%) = {(기본 값-제출 값)/기본 값} * 100 여기서 “기본 값”은 승인된 복원성자료 또는 우리 선급의 컴퓨터 모델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 2. 표 1의 허용 범위를 적용할 때, 2개의 값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한다. 3. 비교에 사용된 프로그램 사이에 계산 방법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검사가 기술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수행된다면 이는 표 1에 명시된 것보다 큰 편차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우리 선급은 충분한 설명이 있고 이 편차가 고려하는 선박에 요구되는 복원성기준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우리 선급의 복원성 계산으로부터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우리 선급이 간주하는 경우 허용범위로 부터의 편차는 인정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7) 승인 절차 가.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본선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승인 조건 복원성 계산에 사용되는 본선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설계승인의 검증, 적용되는 경우 (b) 사용된 데이터가 선박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 ((7.2)항 참조) (c) Test conditions 검증 및 승인 (d) 요구되는 선종 및 복원성 계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검증 (e) (5) (가), (b)에 따른 기능적 요구사항의 검증 복원성 계산을 위해 본선의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설치시 테스트하여 확인해야 한다. ((9)항 참조). 승인된 test condition 사본과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매뉴얼이 본선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1) 일반 승인 (선택 사항) 가. 계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승인을 위해 우리 선급에 신청할 때, 우리 선급은 2개 이상의 설계데이터 세트로 구성된 시험데이터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은 선박 및 적재조건을 정확하게 정의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선형 데이터, 구획 데이터, 경하상태 특성 및 재화중량 데이터를 포함한다. 나. 허용 가능한 선형과 구획 데이터는 선형과 구획경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표면 좌표 형태, 예를 들어 off-sets 테이블 또는 사전에 계산된 테이블 형식 데이터 (예 : hydro 테이블, 용량 테이블 등) 일 수 있으며 이는 승인을 위해 제출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른다. 다. 대안으로는 신청자와 우리선급 사이에 합의된 적어도 2개의 시험선에 기초하여 일반승인이 제공 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승인이 요청된 2가지 유형의 선박에 대해 테스트되어야하며, 2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설계 데이터 세트가 있어야한다. 한 유형의 선박에 대해서만 승인이 요청되는 경우, 해당 유형의 선박의 다른 선형에 대한 최소 2개의 데이터 세트를 테스트해야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마. 선형데이터의 입력을 기반으로 하는 계산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승인될 3가지 유형의 선박에 대해 설계데이터 세트가 제공되거나 만약 한 종류의 선박에만 승인이 요청 될 경우 다른 선형에 대해 최소 3개의 데이터 세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선형, 전형적인 배열 및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설계데이터 세트가 필요한 대표적인 선종으로는 탱커, 산적화물선, 컨테이너선 및 기타 건화물선 및 여객선이 포함된다. 사. 시험데이터 세트는 시험선박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해야한다. 얻어진 결과(적절한 경우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정수압 데이터 및 교차곡선 데이터와 함께)는 프로그램의 계산 정확도 평가를 위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한다. 아. 우리 선급은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병렬계산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신청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7.2) 특정 승인** 가. 우리 선급은 프로그램이 설치될 특정 선박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된 계산결과 및 실제 선박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해야한다. 나. 데이터 검증을 위해 우리 선급에 신청할 때, 신청자는 선박의 승인된 복원성자료에서 test condition으로 사용될 최소 4개의 적재조건이 있어야 한다. 액체를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탱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곡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 곡물 적재조건 중 하나는 곡물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화물창을 포함해야한다. Test condition 내에서 각 구획은 적어도 한 번은 적재되어야한다. Test condition은 일반적으로 만재상태에서 경하상태 조건에 이르기까지 흘수의 범위를 포함하며, 최소 하나의 출항 및 입항 condition을 포함해야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안전귀항을 위한 형식 4 복원성 소프트웨어의 경우, 우리 선급은 최소 3개의 손상사례를 조사해야하며, 각각의 경우는 선박의 승인된 복원성자료와 관련된 3개 이상의 적재조건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출력은 승인된 손상 복원성자료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 소스의 해당 로드/손상 사례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다. 우리 선급은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자료가 우리 선급에 제출된 현재의 도면 및 문서에 따라 선박의 배치 및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경하중량 특성과 일치하는지를 본선에서 추가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검증해야 한다. (a) 프로그램 버전번호를 포함한 계산 프로그램의 식별; (b) 주요 치수, hydrostatic 특성 및 해당되는 경우 선박의 profile (c) 선수수선 및 선미수선의 위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박 흘수표시의 실제 위치에서 선수 및 선미흘수를 도출하기 위한 계산 방법 (d)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경사시험 또는 경하중량시험에서 얻어진 경량중량 및 무게 중심 (e) 선체선도, off-set 테이블 또는 우리 선급이 선박을 모델링하기 위해 필요한 선형 데이터 (f) 용량표(사운딩/얼리지 테이블), 해당된다면, 자유 표면효과 수정과 함께 프레임 간격 및 볼륨중심을 포함한 구획 정의 (g) 각 적재조건에 대한 화물 및 소모품 분포 우리 선급의 검증은 본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래밍 된 정보가 선박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대한 신청자 및 선주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사용자 매뉴얼(User's manual) *(2017)* (1) 우리 선급에서 검토된 사용자 매뉴얼을 기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매뉴얼에는 그 기기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복원성 계산 등에 대한 작동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2) 본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영어가 아닌 경우 영역본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조우 할법한 오류 메시지 및 경고에 대한 열거가 있어야 한다. 오류 메시지 및 경고는 각 경우별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후속조치가 애매하지 않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위 사항들에 추가하여 다음 항목들 또한 사용자 매뉴얼에 삽입되어야 한다. 단, 다음 항목 중 일부는 test condition에 삽입될 수 있다. - 우리 선급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설계승인 증서 - 원활한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하드웨어 최소사양 - 계산기능, 방법 및 원리에 대한 설명 - 경하중량 및 중량중심에 대한 좌표들 - 각 test loading condition에 대한 전체 deadweight 상세 - 제한값 등을 포함한 적용되는 코드/협약의 상세 - 설명과 견본 기기 출력에 의해 잘 기술된 비표준형 예시 한개 - 각 test loading condition에 대한 결과의 hard copy - 기기의 테스팅 주기에 대한 상세(복원성 적하 지침기기는 사용에 익숙한 숙련된 선원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선장은 승인된 test loading condition을 사용하여 빈번한 간격으로 기기의 정확한 기능의 발휘 유무를 검증할 것을 권고함) - 전력 상실시 응급조치법에 대한 상세 - 각 예상되는 스크린 상 디스플레이에 대한 출력 예시들. 이는 사용자가 익숙하지 않은 출력과 조우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문과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 (5) 종강도 적하지침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사항에 추가하여 우리 선급에서 지정한 정수 중 굽힘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값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창구덮개, 갑판 및 이중저 구조 등에 대한 허용 국부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사용자 매뉴얼 최소한 다음에 대한 설명과 지시사항이 포함된 간단하고 쉬운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 설치 나. 기능 키 다. 메뉴 표시 라. 입력 및 출력 데이터 마.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최소사양 바. test loading condition의 사용 사. 컴퓨터 안내 대화 단계 아. 경고 목록 (9) 설치 시험 가. 최종 또는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후 컴퓨터의 정확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검사원의 입회하에 다음에 따라 시험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선장의 책임이다. 승인된 test condition으로부터 최소 하나의 loading case(경하중량 제외)가 계산되어야 한다. 비고 : 실제 적재상태에 대한 결과는 컴퓨터가 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test condition은 컴퓨터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수행해야할 단계 : (a) Test load case를 검색하고 계산실행을 시작한다. 계산된 복원성 결과와 문서내의 복원성 결과를 비교한다. (b) 흘수나 배수량을 최소한 10% 변경하기에 충분한 재화중량(탱크 중량 및 화물 중량)의 항목들을 변경한다. 승인된 test condition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c) 위의 변경된 적재조건을 수정하여 초기 시험조건을 복원하고 결과를 비교 한다. 승인된 test condition관련 입력 및 출력 데이터가 복귀되었는지 확인 한다. (d) 대안으로, 1개 이상의 test condition이 선택되고 시험계산은 선택된 각 test condition에 대한 모든 재화중량 데이터를 동일하게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그 결과를 test condition의 승인된 사본 결과와 동일한지 검증한다. **(10) 정기적 테스트** 가. 최소한 1개의 승인된 test condition을 이용하여 연차검사 시 복원성계산을 위해 본선에 설치된 컴퓨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은 본선 선장의 책임이다. 현장 검사원이 본선 컴퓨터 시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시험으로 부터 얻은 test condition 결과의 사본은 현장 검사원의 검증을 위한 충분한 test 문서로서 본선에 보관되어야 한다. 나. 정기검사 시 승인된 모든 test loading condition에 대한 검증은 현장 검사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다. 시험절차는 (9)항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1) 기타 요건** 가. 의도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잘못 또는 비정상적으로 사용될 때 작동을 모니터링하고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에 저장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전력손실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라. 용량을 초과하여 구획이 채워지거나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는 등의 제한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4) 2021.07.01일자 시행사항

(검사신청일 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ESP'(2-1)	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	(1) : 〈생략〉 (2-1) : 〈생략〉 (2-2) :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추가하여 이중선체의 배치는 **적용지침 7편 10장 102. 1항**에 따른다. *(2019)* (2-3) : (2-2)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박에 부기한다. *(2019)* 〈이하 생략〉
1. Oil Tanker (Double Hull)(2-2) (Double Hull)(EXP) (2-3) (FAC)(1) (FAO)(1) (FBC)(1) (CSR)(2-5)	Asphalt(2-4)	

탱커팀 개정요청 (HUT4000-2704-2020, 13th Oct. 2020)
: OIL TANKER에 부여하도록 신설된 (EXP) 부기부호는 MARPOL ANNEX 1 Reg.19.6 (재화중량 5000톤 미만의 탱커에 대한 요건) 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목적으로 파악됨.
그러나 1편 부록 1-1과 이를 참조하는 적용지침 7편 10장 102. 1항을 읽었을 때 (EXP) 부기부호 신설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 기존에는 MARPOL ANNEX 1 Reg.19.3 또는 Reg.19.6을 만족할 경우 모두 (Double Hull)만 부여하였음.
이후 (EXP)가 추가되면서 Reg.19.3을 만족할 경우에는 (Double Hull), Reg.19.6을 만족할 경우에는 (Double Hull)(EXP)를 부여해야함.

현 행	개 정 사 유

부록 1-1 선급부호의 선종, 특기사항, 추가설비부호의 부기상세

1. 선급부호

1.1 선종 및 특기사항

선종	특기사항	비고
'ESP'(2-1)	Crude Product Crude/Product Product/Asphalt Asphalt	(1) : 〈현행과 동일〉 (2-1) : 〈현행과 동일〉 (2-2) :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의 배치가 1973/78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1 Reg. 19.3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추가하여 이중선체의 배치는 **적용지침 7편 10장 102. 1항**에 따른다~~. *(2021)* (2-3) : (2-2)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주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탱크가 화물지역의 전 길이에 걸쳐 보이드스페이스용 또는 평형수용의 이중선측 및 이중저로 구성된 이중선체의 ~~에 의하여 보호되는~~ 배치가 1973/78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Annex 1 Reg. 19.6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선박에 부기한다. *(2021)* 〈이하 생략〉
1. Oil Tanker (Double Hull)(2-2) (Double Hull)(EXP) (2-3) (FAC)(1) (FAO)(1) (FBC)(1) (CSR)(2-5)	Asphalt(2-4)	

탱커팀 개정요청 (HUT4000-2704-2020, 13th Oct. 2020)
: OIL TANKER에 부여하도록 신설된 (EXP) 부기부호는 MARPOL ANNEX 1 Reg.19.6 (재화중량 5000톤 미만의 탱커에 대한 요건) 에 적합한 선박에 부여하는 목적으로 파악됨.
그러나 1편 부록 1-1과 이를 참조하는 적용지침 7편 10장 102. 1항을 읽었을 때 (EXP) 부기부호 신설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됨.

- 기존에는 MARPOL ANNEX 1 Reg.19.3 또는 Reg.19.6을 만족할 경우 모두 (Double Hull)만 부여하였음.
이후 (EXP)가 추가되면서 Reg.19.3을 만족할 경우에는 (Double Hull), Reg.19.6을 만족할 경우에는 (Double Hull)(EXP)를 부여해야함

현 행	개 정 사 유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CDG	**규칙 8편 12장**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CDG	**규칙 8편 12장**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AFP-A	**규칙 8편 부록 8-9**의 **2절** 요건에 적합한 선박
AFP-M	**규칙 8편 부록 8-9**의 **3절** 요건에 적합한 선박
AFP-C	AFP-C: 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절**의 선종별 해당 요건이 추가 적용된 선박.
AFP-C(1)	AFP-C(1): 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2**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2)	AFP-C(2): 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3**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3)	AFP-C(3): 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4**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AFP-C(FSC)	AFP-C(FSC): 화물구역에 **규칙 8편 부록 8-9**의 **405.**의 **5**항의 요건이 추가적용된 컨테이너선

선급 및 강선규칙 8편 부록 8-9 '화물선에 대한 추가요건'에 따른 부기부호 추가

현 행		개 정 사 유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CLEAN1, CLEAN2, CLEAN3	**지침 부록 1-15**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설비를 갖춘 선박 *(2021)*	
〈생략〉	〈생략〉	
EEAS-SCR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1절**에서 규정하는 촉매 환원제로서 암모니아 또는 우레아를 사용하는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를 위한 요건에 적합한 선박	
EEAS-EGR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2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위한 요건에 적합한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EEAS-EGC-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EEAS-EGC(R)-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이중화 요건)	
EEAS-EGC(S)-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형식승인 및 기자재 검사)	
EGC Ready D-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4절**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EGC Ready I(SR, EX, WR, CH, SD, EG)-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4절**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설치를 한 선박	
〈새롭게 추가〉	〈새롭게 추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추가특기사항	적용규정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고, 해당 내용을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에 수록함. EEAS 부기부호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 각각의 구분이 어려워 CEmN과 CEmS (Control of Emission)으로 부기부호 변경함.
CLEAN1, CLEAN2, CLEAN3	~~지침 부록 1-15~~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1장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설비를 갖춘 선박 *(2021)*	
〈생략〉	〈생략〉	
~~EEAS~~ CEmN-SCR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1절~~에서 규정하는 ~~촉매 환원제로서 암모니아 또는 우레아를 사용하는~~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2장 1절에서 규정하는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를 위한 요건에 적합한 선박 *(2021)*	
~~EEAS~~ CEmN-EGR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2절~~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2장 1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위한 요건에 적합한 선박 *(2021)*	
CEmN-E&F *(2021)*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2장 1절에서 규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설비 없이 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와 연소 환경 조정을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한 선박	
~~EEAS~~ CEmS-EGC-D. O, C, H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2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EEAS~~ CEmS-EGC(R)-D. O, C, H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2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이중화 요건) *(2021)*	
~~EEAS~~ CEmS-EGC(S)-D. O, C, H *(2021)*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3절~~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2절에서 규정하는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형식승인 및 기자재 검사) *(2021)*	
EGC Ready D- 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4절~~에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3절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2021)*	
EGC Ready I(SR, EX, WR, CH, SD, EG)-D, O, C, H *(2019)*	~~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에 관한 지침 제 4절~~에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3절에 따라 배기가스 세정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설치를 한 선박 *(2021)*	
CEmS-LSF *(2021)*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3장 1절에 적합한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5 CLEAN 부호 부여를 위한 요건 1. 일반사항 (1) 이 부록은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또는 등록된 선박이 설계, 건조 및 운전에 대하여 환경보호와 관련된 요건에 적합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호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1)호의 부호는 요건의 강화 수준에 따라 다음의 부호로 구분된다. (가) CLEAN1 부호: 3항에서 규정하는 협약요건에 적합한 선박 (나) CLEAN2 부호: 4항에서 규정하는 우리 선급의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다) CLEAN3 부호: 5항에 적합한 선박 2. 검사 (1) 등록검사 (가) 각 부호에 대하여 해당 요건에서 규정하는 문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부호에 대하여 해당 요건에서 규정하는 모든 관련 장비들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문서, 절차서 및 기록부의 선내 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선급검사 (가) 등록유지를 위한 선급검사는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정기검사 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IV 및 V관련 검사는 정기검사 시에만 시행하고, AFS협약 관련 검사는 정기적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나) 각 부호에 대하여 해당 요건에서 규정하는 모든 관련 장비들의 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문서, 절차서 및 기록부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록 1-15 CLEAN 부호 부여를 위한 요건 - 〈Void〉** *(2021)* **(별책 -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참조)** 〈이하 현행과 동일〉	CLEAN 부호 관련 사항을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으로 이관함.

(5) 2021.07.01일자 시행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2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1. ~ 6. 〈생략〉** 7. 신조검사계획 (1) ~ (3) 〈생략〉 (4) 신조를 하는 동안의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이 시작회의에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선체구조의 제작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 또는 제작/건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선급이 인정한 제작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작업은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추가〉	**부록 1-12 제조중등록검사 시의 선체검사** **1. ~ 6. 〈현행과 동일〉** 7. 신조검사계획 (1) ~ (3) 〈현행과 동일〉 (4) 신조를 하는 동안의 선체구조에 대한 건조품질기준이 시작회의에서 검토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선체구조의 제작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 또는 제작/건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선급이 인정한 제작기준(Recognized Fabrication Standard, RFS)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작업은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 우리선급은 (4.1) 또는 (4.2)에 해당되는 경우,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의 대안으로 우리 선급이 인정한 제작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4.1) 인정한 제작기준이 잘 확립되어 있고 신조선과 유사한 설계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기록(신조선 건조계약 전 3년 이상)이 잘 문서화 되어 있고 해당기록이 신조선과 동일한 조선소에 대한 경우. 조선소는 건조에 사용할 인정한 제작기준을 참조하고 선택한 인정한 제작기준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강조하는 요약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요약문서는 선박의 "시작회의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요약문서는 선박건조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제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경우, 부록 12-2-2, 표 A Tier II항목 11에 포함").	- reflected to 7.42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초기 GBS 감사시 Rec. 47 대신 제작표준의 사용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을 관찰사항으로 식별. - Z23의 제7.4항에 Rec. 47 대신 인정된 제작표준(RFS)의 사용을 수용하는 절차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2) 인정한 제작기준이 신설 또는 개정 또는 (4.1)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a) 인정한 제작기준의 허용오차 및 구성기준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권고사항 Rec 47 "건조 및 수리 품질기준(Shipbuilding and Repair Quality Standard)"의 허용오차 및 구성기준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Rec 47의 요건보다 덜 엄격한 조항은 식별되어야 한다. (b) (4.2) (a)에서 식별된 인정한 제작기준의 허용오차 및 제작 표준을 평가하여 관련(또는 제안된) 설계에 대한 사용 제한 및/또는 사용 허용 가능성을 결정한다. 사용 및/또는 제한에 대한 허용 가능성에 대한 세부정보는 기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c) 상기 (a)와 (b)의 결과를 포함한 요약문서를 작성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또한 인정한 제작기준에 대한 참조, (4.2) (b)의 일부로 분석되지 않은 허용오차 및 제작 표준의 상세 및 인정한 제작기준의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문서는 선박의 "시작회의"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요약문서는 해당하는 경우 선박건조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제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경우, 부록 12-2-2, 표 A Tier II항목 11에 포함"). *(2021)*	- reflected to 7.4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초기 GBS 감사시 Rec. 47 대신 제작표준의 사용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가 없음을 관찰사항으로 식별. - Z23의 제7.4항에 Rec. 47 대신 인정된 제작표준(RFS)의 사용을 수용하는 절차 추가
(5) 시작회의에는 조선소의 합의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 PR3(Transparency of Classification and Statutory Information)에 정의된 다른 기관(선박소유자, 정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5) 시작회의에는 조선소의 합의에 따라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절차요건 PR3(Transparency of Classification and Statutory Information)에 정의된 다른 기관(선박소유자, 정부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0. 선박건조철(Ship Construction File)	**10.** 선박건조철(Ship Construction File)	
이 항의 목적은 **부록 1-12-2**의 **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이 항의 목적은 **부록 1-12-2**의 **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 reflected to 10.2.5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본선의 선박건조철에 보관되는 문서의 목적은 검사, 수리 및 정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 1에 나열된 문서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본선의 선박건조철에 보관되는 문서의 목적은 검사, 수리 및 정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 1에 나열된 문서에 추가하여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압력등급 다선 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MCTSS)의 설치 및 정비 개선을 위한 글로벌 통합표준 필요.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선체에 용접된 단강품 및 주조품 증서사본(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W7(Hull and Machinery Steel Forging) 및 W8(Hull and Machinery Steel Casting))	(라) 선체에 용접된 단강품 및 주조품 증서사본(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W7(Hull and Machinery Steel Forging) 및 W8(Hull and Machinery Steel Casting))	선박 및 MOU를 적절하게 정비 및 침수시 선박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MCTSS 설치, 정비 및 수리를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방법 필요.
(마) 선박의 수밀 및 풍우밀보전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의 상세 〈새롭게 추가〉	(마) 선박의 수밀 및 풍우밀보전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의 상세 *(2021)*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는 조선소측에서 준비해야 하며 인쇄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기록부 예는 부록 1-12-4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 작성 예”를 참조한다. 여기에는 선박에서 최종 검사 후 설치된 상태를 문서화하는 마크/식별 시스템, 설치된 각 케이블 관통부 형식에 대한 제조자 매뉴얼을 참조하는 문서, 관통부 형식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 적용 가능한 설치 도면 및 조선소에서 최종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상태의 각 관통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추가하여, 기록부에는 검사, 변경, 수리 및 정비를 기록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험요건의 상세를 포함한 탱크시험방안서(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S14(Testing Procedures of Watertight Compartments))	(바) 시험요건의 상세를 포함한 탱크시험방안서(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통일규칙(UR) S14(Testing Procedures of Watertight Compartments))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차)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에 따른 선급요건으로서 국제해사기구(IMO)의 도장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PSPC) 적용대상선박인 경우 도장기술파일(Coating Technical File)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부록 1-12-1 조선소 검토 기록** **부록 1-12-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 **부록 1-12-3 선박건조철 양식 예** 〈새롭게 추가〉	(차)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공통구조규칙에 따른 선급요건으로서 국제해사기구(IMO)의 도장성능기준(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PSPC) 적용대상선박인 경우 도장기술파일(Coating Technical File)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부록 1-12-1 조선소 검토 기록** **부록 1-12-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 **부록 1-12-3 선박건조철 양식 예** **부록 1-12-4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 작성 예** *(2021)*	- reflected to Enclosures, D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현 행	개 정 사 유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현행과 동일〉								
1.3c	**용접 감독**	자격이 있는 감독자의 충분한 수	검토 및 패트롤	Rec 20 및 47				감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	
1.4	**용접-표면의 불연속성**	사실상 중대한 결함이 없음, 단면 및 크기에 대한 만족	육안검사, 표면탐상기술, 문서의 검토 및 작업자에 대한 패트롤	Rec 20 및 47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T방안서, NDT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NDT가 시행되는 작업장의 식별, 예를 들면, 판의 맞대기용접선, 선체구조와 주조품의 용접선	
								해당되는 경우, NDT가 승인된 방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T방법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	
								특히 외주업체가 고용된 경우, 작업자는 적절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	
								NDT가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T기록의 검토	

- reflected to Table 1, 1.3c and 1.4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Rec. 20"을 "W33"으로 대체 및 "NDT" 대신 "NDE"로 대체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 reflected to Table 1, 1.3c and 1.4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Rec. 20"을 "W33"으로 대체 및 "NDT" 대신 "NDE"로 대체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현행과 동일〉									
1.3c *(2021)*	**용접 감독**	자격이 있는 감독자의 충분한 수	검토 및 패트롤	UR W33, Rec ~~20~~ 및 47				감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		
1.4 *(2021)*	**용접-표면의 불연속성**	사실상 중대한 결함이 없음, 단면 및 크기에 대한 만족	육안검사, 표면탐상기술, 문서의 검토 및 작업자에 대한 패트롤	UR W33, Rec ~~20~~ 및 47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E ~~NDT~~방안서, NDE ~~NDT~~,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NDE ~~NDT~~ 시행되는 작업장의 식별, 예를 들면, 판의 맞대기용접선, 선체구조와 주조품의 용접선		
								해당되는 경우, NDE ~~NDT~~가 승인된 방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E ~~NDT~~방법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		
								특히 외주업체가 고용된 경우, 작업자는 적절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		
								NDE ~~NDT~~가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E ~~NDT~~기록의 검토		

현 행										개 정 사 유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 reflected to Table 1, 1.5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Rec. 20"을 "W33"으로 대체 및 "NDT" 대신 "NDE"로 대체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1.5	**용접-불연속성**	NDT는 용접에 사실상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자격 작업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 문서의 검토 및 작업자에 대한 패트롤, 필름검사	Rec 20 및 47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T방안서, NDT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NDT가 시행되는 작업장의 식별, 예를 들면, 판의 맞대기용접선, 선체구조와 주조품의 용접선		
								해당되는 경우, NDT가 승인된 방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T방법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		
								특히 외주업체가 고용된 경우, 작업자는 적절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		
								기록이 작성되었고 이는 상질계(Image Quality Indicator)와 같이 인정된 기준에 적합함과 기록된 감광도에 대한 검증		
								보고서 및 방사선사진이 조선소에 의하여 정확히 평가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 방사선사진에 대한 규칙적인 검사원 검토		
								제조자 및 인정되는 기준요건에 따라 설비가 만족하게 교정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T가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1.5 *(2021)*	**용접-불연속성**	NDE ~~NDT~~는 용접에 사실상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자격 작업자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방사선투과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 문서의 검토 및 작업자에 대한 패트롤, 필름검사	UR W33, Rec ~~20~~ 및 47		해당 조선소기준 및 인정된 기준 및 규칙, 용접 및 NDE ~~NDT~~방안서, NDE ~~NDT~~보고서, 작업자 기량자격	요구 안함	NDE ~~NDT~~가 시행되는 작업장의 식별, 예를 들면, 판의 맞대기용접선, 선체구조와 주조품의 용접선	
								해당되는 경우, NDE ~~NDT~~가 승인된 방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E ~~NDT~~방법의 적적성에 대한 검증	
								특히 외주업체가 고용된 경우, 작업자는 적절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	
								기록이 작성되었고 이는 상질계(Image Quality Indicator)와 같이 인정된 기준에 적합함과 기록된 감광도에 대한 검증	
								보고서 및 방사선사진이 조선소에 의하여 정확히 평가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증. 방사선사진에 대한 규칙적인 검사원 검토	
								제조자 및 인정되는 기준요건에 따라 설비가 만족하게 교정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NDE ~~NDT~~가 인정되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 reflected to Table 1, 1.5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Rec. 20"을 "W33"으로 대체 및 "NDT" 대신 "NDE"로 대체

현 행	개 정 사 유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안전구조증서	미결된 결점 또는 결함이 없음	입회		Reg. I/7 or Reg. I/10 of SOLAS as amended, as appropriate			기국요건이 선체구조에 적용되었음에 대한 검증	
	〈새롭게 추가〉								

조선소명칭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시작회의 일자	
조선소대표	
선급대표	

*** IACS Recommendations는 필수요건이 아님.**

- reflected to Table 1, 8.6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건조기능에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 요건 추가

표 1 선체검사항목활동 표

참조	건조기능	선급 검사요건	선급 검사방법	IACS 문서*	정부대행요건 및 관련 문서	건조 중 검사원이 사용가능하여야 하는 문서	선박건조철을 위한 문서	특정활동	이 신조업무를 위한 선급의 제안
	안전구조증서	미결된 결점 또는 결함이 없음	입회		Reg. I/7 or Reg. I/10 of SOLAS as amended, as appropriate			기국요건이 선체구조에 적용되었음에 대한 검증	
8.6 *(2021)*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승인된 도면 준수, 조립에 대한 육안 검사, 정렬 및 고정 확인	공정 중 패트롤 및 완료된 시스템의 입회		Reg. II-1/13 and 13-1 of SOLAS as amended	조선소의 검사 기록, 제조업체의 시방서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	이 표의 참조 1, 2.4 및 2.5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올바른 용접 및 조립 요건의 적용 여부 검증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형식승인 여부 검증 기록부의 형식과 내용 검증	

조선소명칭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시작회의 일자	
조선소대표	
선급대표	

* IACS Recommendations는 필수요건이 아님.

- reflected to Table 1, 8.6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건조기능에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 요건 추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2-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 1. ~ 2. 〈생략〉 3. 선박건조철(SCF) 3.1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의 기능적 요건이 선박설계 및 건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선박건조철(SCF)은 신조선의 인도 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선박 및/또는 육상에 보관되고 적절히 최신화되어야 한다. 선박건조철의 내용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1.1 다음의 설계특정정보가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9 선박의 수밀 및 풍우밀보전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의 상세. 〈새롭게 추가〉 〈이하 생략〉	**부록 1-12-2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2-1장 A-1편 3-10규칙(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 적용대상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요건** 1. ~ 2. 〈현행과 동일〉 3. 선박건조철(SCF) 3.1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한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의 기능적 요건이 선박설계 및 건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선박건조철(SCF)은 신조선의 인도 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선박 및/또는 육상에 보관되고 적절히 최신화되어야 한다. 선박건조철의 내용은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1.1 다음의 설계특정정보가 선박건조철(SCF)에 포함되어야 한다: .1 ~ 8. 〈현행과 동일〉 .9 선박의 수밀 및 풍우밀보전성의 일부를 형성하는 설비의 상세. 9.1 수밀 케이블 관통부 밀봉사스템 기록부는 조선소측에서 준비해야 하며 인쇄물 또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공 될 수 있다. *(2021)* 기록부의 예는 부록 1-12-4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 작성 예”를 참조한다. 여기에는 선박에서 최종 검사 후 설치된 상태를 문서화하는 마크/식별 시스템, 설치된 각 케이블 관통부 형식에 대한 제조자 매뉴얼을 참조하는 문서, 관통부 형식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 적용 가능한 설치 도면 및 조선소에서 최종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된 상태의 각 관통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추가하여 기록부에는 검사, 변경, 수리 및 정비를 기록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 reflected to Appendix 2, 3.1.1.9.1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압력등급 다선 케이블 관통부 밀봉 시스템(MCTSS)의 설치 및 정비 개선을 위한 글로벌 통합표준 필요. 선박 및 MOU를 적절하게 정비 및 침수시 선박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MCTSS 설치, 정비 및 수리를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방법 필요.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록 1-12-4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 기록부 작성 예 *(2021)*

- reflected to Appendix 3 of IACS UR Z23 (Rev.7 Oct 2020)

: 케이블 관통부 밀봉시스템의 작성 예 추가

Name of Ship: Sample
IMO No: 12345
Place: Hamburg
Date: XX/XX/2017

Inspected by: Smith

Transits 4
Total Openings 4

NOTES:
C = Compound (not known brand)
R = Smith Blocks
B = MCT Williams
H = Heavy corrosion
N = Nelson, Terasaki
MB=Mixed brands
MM=Mixed module sizes
NVD=No Visible Defects
CPA=Checkpoints rectangular frames
CPB=Checkpoints round frames

TRANSIT			Inspected side		BRAND	FRAME		Type Approved	CONDITION(G, F, P)	INSPECTED	REPAIRED	MODIFIED	MAINTAINED		Checked by	DATE
Drawing number	ID	Location	F	B		Type	Opening number									
GIA-07-1047-000-883	TT-MCT-011	_	_	_	C	d= 50	x	_	_	_	_	_	_	NVD	PTO	2015-02-26
GIA-07-1047-000-883	TT-MCT-012	_	_	_	C	450x200	x	_	_	_	_	_	_	NVD	PTO	2015-02-26
GIA-07-1047-000-883	TT-MCT-013	_	_	_	C	550x200	x	_	_	_	_	_	_	NVD	PTO	2015-02-26
GIA-07-1047-000-883	TT-MCT-014	_	_	_	C	750x200	x	_	_	_	_	_	_	Open, drilled hole not closed	PTO	2015-02-26